

2030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건립입지
후보지

2024.05



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

2024. 05



제 출 문

여수시장 귀하

귀 시와 계약 체결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 완료하였기에 그 성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
하여 제출합니다.

2024년 5 월 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손 영 일

목 차

제 1 장 사업개요	3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의 내용	3
1.2.1 과업개요	3
1.2.2 과업의 범위	4
1.3 과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4
1.4 입지선정절차	5
제 2 장 지역의 일반현황	9
2.1 토지 및 기후	9
2.1.1 지역 개황	9
2.1.2 지형 및 지질	11
2.1.3 하천현황	12
2.1.4 기후 및 기상현황	12
2.2 사회 및 경제환경	20
2.2.1 행정구역 현황	20
2.2.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1
2.2.3 도시계획 현황	21
2.2.4 인구현황	22
2.2.5 산업 및 경제 현황	24
2.2.6 도로 및 교통 현황	24
2.2.7 재정현황	25
2.3 환경기초시설 현황	26
2.3.1 하수도	26
2.3.2 폐기물 처리시설	27
제 3 장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31
3.1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 설정	31
3.1.1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산정 절차	31
3.1.2 계획목표년도 설정	31

3.1.3 계획인구 설정	32
3.2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40
3.2.1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40
3.2.2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41
3.3 처리대상량 산정	42
3.3.1 소각시설 처리대상량	42
3.3.2 총 처리대상량 산정	45
3.4 시설용량 산정	46
3.4.1 월변동계수 산정	46
3.4.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용량산정	46

제 4 장 후보지 분석 및 평가 51

4.1 후보지별 분석	51
4.1.1 입지후보지 현황	51
4.1.2 입지여건	53
4.1.3 지형·지세	59
4.1.4 토지이용현황	63
4.1.5 지장물 현황	64
4.1.6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64
4.1.7 주거지역과의 관계	66
4.1.8 유틸리티 연계가능성	66
4.1.9 유역면적	68
4.1.10 관련법 저촉 및 인·허가	68
4.1.11 시설배치계획	69
4.1.12 진입도로 개설 검토	71
4.1.13 토지 취득비용	72
4.1.14 개략공사비	73
4.2 후보지 평가방법	75
4.2.1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립	75
4.2.2 평가방법	86
4.2.3 후보지별 평가	87
4.2.4 최적후보지 평가	101

제 5 장	관련법규 검토	109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관련 법규	109
5.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9
5.1.2	환경영향평가법	123
5.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6
5.1.4	건축법	133
5.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법규	137
5.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	137
제 6 장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	147
6.1	입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	147
6.1.1	주변영향지역 지원 업무흐름도	147
6.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8
6.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150
6.3	여수시 주변영향지역 지원 계획	151
6.4	타 지자체 주민지원사업 사례	151

제1장 과업의 개요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2 과업의 내용
- 1.3 과업의 기대효과
- 1.4 과업지구 위치도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종료 및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대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2030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선정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으로 함.

1.2 과업의 내용

1.2.1 과업개요

- 과업명 : 2030 자원회수시설(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 위치 : 여수시 일원
(후보자-1) 여수시 월내동 2-2번지 외 10필지(면적 113,793.9㎡)
(후보자-2)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971번지 외 5필지(면적 207,351㎡)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 시설종류 및 시설용량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식	사 업 비 (억 원)		
			합 계	국비(30%)	지방비(70%)
합 계			2,459.4	737.9	1,721.5
소각시설	350	스토커	1,743.0	522.9	1,220.1
음식물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150	통합바이오 가스화	604.5	181.4	423.1
재활용선별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30	자동화선별	111.9	33.6	78.3

1.2.2 과업의 범위

- 1) 지역의 일반현황(과거 10년간의 자료)
- 2)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현황
- 3)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상량 예측
- 4) 후보지별 입지여건 조사(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5) 입지제한사항 저촉여부 및 관련법규 검토
- 6) 입지후보지 분석 및 등급 평가

1.3 과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31 :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여수시 공고 제2023-350호)
- 2023. 05. 10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입지선정위원 위촉
- 2023. 06. 22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 입지 타당성조사업체 선정
- 2023. 07. 11 : 입지후보지 현장조사
 - 후보지 지형, 현황, 지장물, 진입도로, 주변현황 등 현장조사
- 2023. 07. 21 : 2030 자원회수시설(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여수시 제2023-2072호)
- 2023. 07. 21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중간보고
 - 평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2024. 04. 17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최종보고
 - 후보지 평가결과 및 선정
- 2024. 05.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 과정 및 결과 열람 공고
- 2024. 05.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1.4 입지선정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22호, 2023. 9.14]

<p>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9조1항 및 2항)</p>	<p>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기준과 방법</p>	
<p>입지선정위원회설치(9조3항)</p>	<p>위원장 1명 포함 11~21명 이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인 - 관련 전문가: 4~7인 - 시·군·구의회의원: 2~4인 - 설치기관 소속공무원: 2~4인</p>	
<p>전문 연구기관 선정(9조4항) [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필요치 않을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가능(9조4항)]</p>		
<p>입 지 타당성 조 사 과 정 및 결 과 공 개 (9조6항)</p>	<p>입지타당성조사계획수립,공고 (시행령10조1항) 위원회와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게 통보</p>	<p>자치단체공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경우)</p>
	<p>입지타당성 조사 실시</p>	
	<p>주 민 공 램(시행령10조3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20일 이상 주민에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폐기물 설치기관은 조사결과와 개요를 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경우)</p>
	<p>주민의견 제출(시행령10조4항)</p>	<p>지역주민은 공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의견제출</p>
	<p>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 (시행령10조5항)</p>	<p>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10조5항)</p>
<p>인접지자체 협의(9조7항)</p>	<p>폐기물처리시설: 2km 이내</p>	
<p>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p>		
<p>입지선정(9조3항,4항)</p>	<p>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p>	
<p>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10조)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4. 선정 입지 위치·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p>		
<p>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의 승인 (11조3)</p>	<p>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수립(11조3의1항)</p>	<p>변경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및 처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2. 다만, 규모만 변경시 그 규모 변경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환경부 장관 승인</p>	
	<p>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고시 (11조3의3항)</p>	

제2장 지역의 일반현황

2.1 토지 및 기후

2.2 사회 및 경제환경

2.3 환경기초시설 현황

제 2 장 지역의 일반현황

2.1 토지 및 기후

2.1.1 지역 개황

가. 위치

여수시는 대한민국의 남해안 중앙지점에 입지하여 해양으로 둘러싸인 해양 지향적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는 동으로 경상남도 남해군과 여수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과 여자만을 끼고 있으며, 남으로는 제주도와 북으로는 순천·광양시와 광양만을 경계로 하여 입지해 있다.

주요 도시와의 거리는 서울까지 347km, 광주 121km, 순천 30.8km, 부산 204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표 2.1.1-1〉 여수시 경·위도상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면적
		지 명	극 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동단	남면 연도리	• 북위 34°25' • 동경 127°54'	동서간 63.2km
	서단	삼산면 초도리	• 북위 34°13' • 동경 127°13'	
	남단	삼산면 덕촌리	• 북위 34°00' • 동경 127°19'	남북간 99.4km
	북단	묘도동	• 북위 34°53' • 동경 127°42'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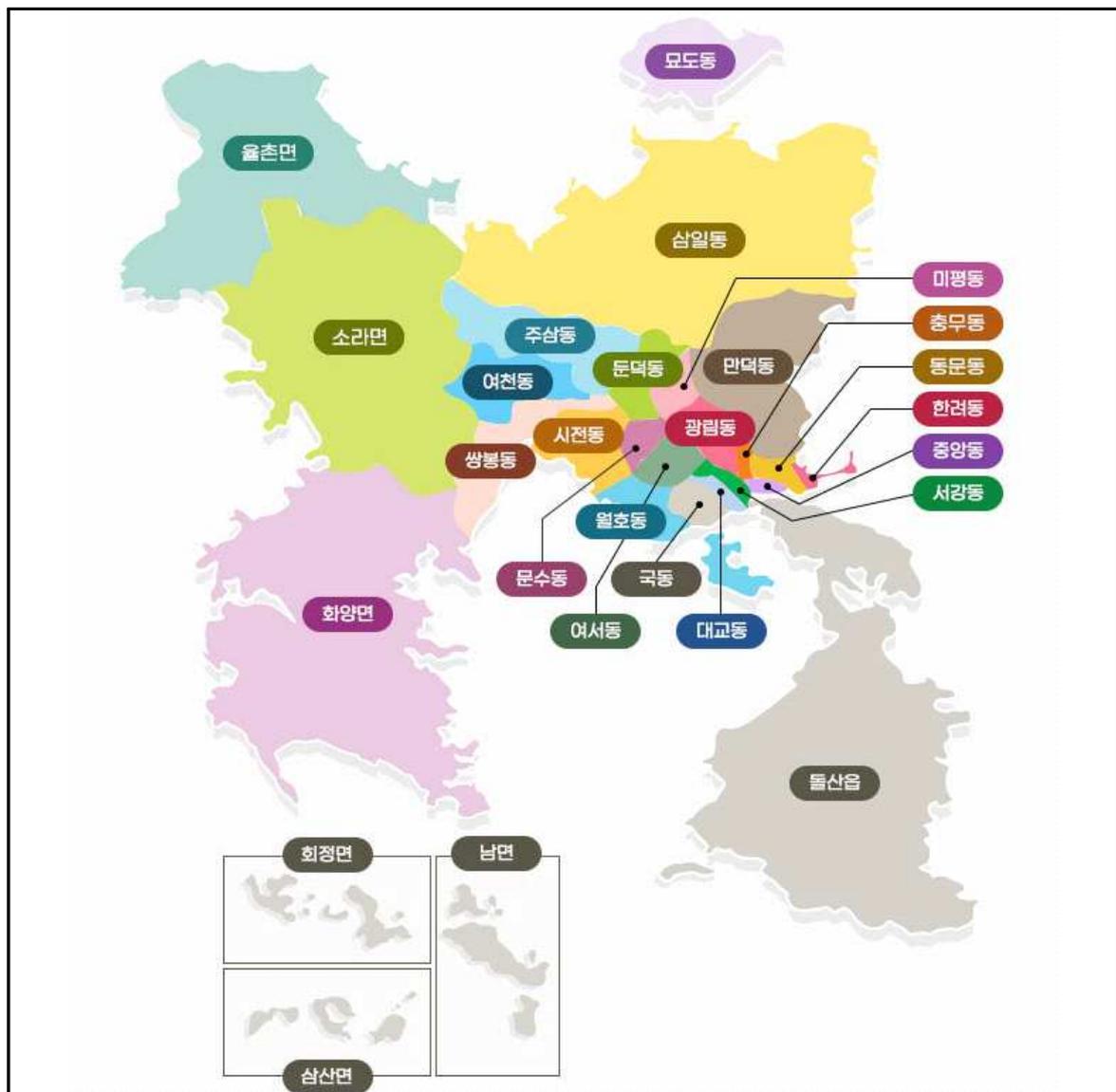
나. 행정구역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여수시의 총면적은 512.2km²이며, 행정구역은 1개의 읍(돌산읍), 6개 면(소라면, 울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과 20개 동, 691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돌산읍이 72.1km²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화양면, 소라면 등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2> 여수시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읍	면	리		반
					통	리	
2021	512.2	100.0	1	6	479	212	4,309
돌 산 읍	72.2	14.1	1	-	-	44	171
소 라 면	60.5	11.8	-	1	-	46	221
울 촌 면	50.2	9.8	-	1	-	37	91
화 양 면	70.2	13.7	-	1	-	31	88
남 면	42.5	8.3	-	1	-	24	118
화 정 면	26.1	5.1	-	1	-	20	72
삼 산 면	27.6	5.4	-	1	-	10	80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그림 2.1.1-1) 여수시의 행정구역 위치

2.1.2 지형 및 지질

가. 표고 분석

여수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형의 육지부와 365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선이 발달하여 가막만, 여자만, 광양만 등 해안의 침식작용에 의해 육지부에 위요(圍繞)된 내만이 다수 분포하며 넓은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다.

표고분석 결과 50m이하 지역이 42.7%, 50~100m이하 지역이 23.3%로써 표고 100m이하인 지역이 여수시 전체 면적의 6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1> 여수시 표고분석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0 ~ 50m	218.02	42.7%
50 ~ 70m	54.63	10.7%
70 ~ 100m	64.41	12.6%
100 ~ 200m	118.75	23.3%
200 ~ 300m	43.31	8.5%
300m 이상	11.42	2.2%
합계	510.54	100.0%

자료 :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시
 주1) 육지부 면적 기준임
 주2)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구적한 면적임

나. 경사 분석

여수시 내륙지역의 산세는 최고봉인 영취산(510.0m)을 중심으로 하여 호랑산(401.6m)~천성산(460.0m)~봉화산(422.2m)으로 이어지는 산악형 지형이 반도 동북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앵무산(343.4m)~국사봉(290.9m)~수암산(371.0m)~황새봉(396.0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반도 서측에서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내륙지역의 주 골격을 이루며 무선산, 종고산, 구봉산, 안심산, 고락산, 마래산 등 표고 200~350m 내외의 산정(山頂)이 도심 인접지역에 다수 분포하여 기복이 심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경사분석 결과 10°미만인 지역이 31.2%, 10°이상 20°미만인 지역이 25.1%로써 경사 20°미만인 지역이 여수시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2> 여수시 경사분석

구 분	면 적(km ²)	구성비(%)
5° 미만	115.86	22.7%
5 ~ 10°	13.66	8.6%
10 ~ 15°	57.70	11.3%
15 ~ 20°	70.16	13.8%
20 ~ 25°	75.20	14.7%
25 ~ 30°	70.37	13.8%
30° 이상	77.58	15.2%
합계	510.54	100.0%

자료 :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시

주1) 육지부 면적 기준임

주2)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구적한 면적임

2.1.3 하천현황

여수시의 하천은 지방하천 12개소가 존재하며, 총연장은 51.90km에 달하고 있다. 수암산, 황새봉, 전봉산, 호랑산, 영취산 등 내륙 북측 지역의 주요 분수령에서 발원한 소규모 지류들은 광양만으로 유입되며, 화양반도 및 돌산지역의 소규모 지류는 가막만과 여자만으로 유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1.3-1> 여수시 하천 현황

구 분	개 소	연장(km)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국가하천	-	-	-	-	-	-
지방하천	12	51.90	71.20	42.53	28.67	59.7
소하천	-	-	-	-	-	-

자료 :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시

2.1.4 기후 및 기상현황

가. 관측지점현황

여수시는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름철은 서늘하고 겨울철은 온난하며 강수량도 풍부하다.

본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세부적인 기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최근 10년간(2013~2022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1.4-1> 관측지점 일람표

지점번호	관측소명	위 치		해발고도 (m)	기압계 해발고도 (m)	기온계 지상높이 (m)	풍속계 지상높이 (m)	강우계 지상높이 (m)
		북 위	동 경					
168	여수	34°74'	127°74'	65.9	66.1	1.5	13.0	0.6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기상청

나. 기상개황

최근 10년간(2013~2022) 여수시의 평균기온은 15.08℃, 최고기온 35.9℃, 최저기온은 -10.9℃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416.2mm, 평균상대습도는 64.8%로 나타났다.

<표 2.1.4-2> 연도별 기상개황

구 분	기온(℃)			연강수량 (mm)	평균상대습도 (%)	일조시간 (hr)	평균풍속 (m/s)
	평균	최고	최저				
2013	14.7	34.5	-9.3	1,200.8	68.0	2,747.3	4.0
2014	14.7	32.8	-6.3	1,575.3	59.5	2,436.6	3.9
2015	14.9	32.9	-7.5	1,250.5	60.3	2,450.1	3.9
2016	15.3	34.4	-8.9	1,616.6	62.4	2,371.6	3.9
2017	15.0	35.9	-6.8	1,019.6	63.5	2,686.3	3.9
2018	14.9	35.0	-10.3	1,578.7	68.3	2,570.3	3.9
2019	15.4	33.9	-4.8	1,529.9	67.5	2,556.9	3.8
2020	15.1	32.6	-7.0	1,751.9	67.8	2,504.9	3.9
2021	15.7	34.1	-10.9	1,571.2	67.3	2,642.2	3.9
2022	15.1	32.7	-7.0	1,067.4	63.3	2,522.0	4.0
최 대	15.7	35.9	-4.8	1,751.9	68.3	2,747.3	4.0
최 저	14.7	32.6	-10.9	1,019.6	59.5	2,371.6	3.8
평 균	15.1	-7.9	33.9	1,416.2	64.8	2548.8	3.9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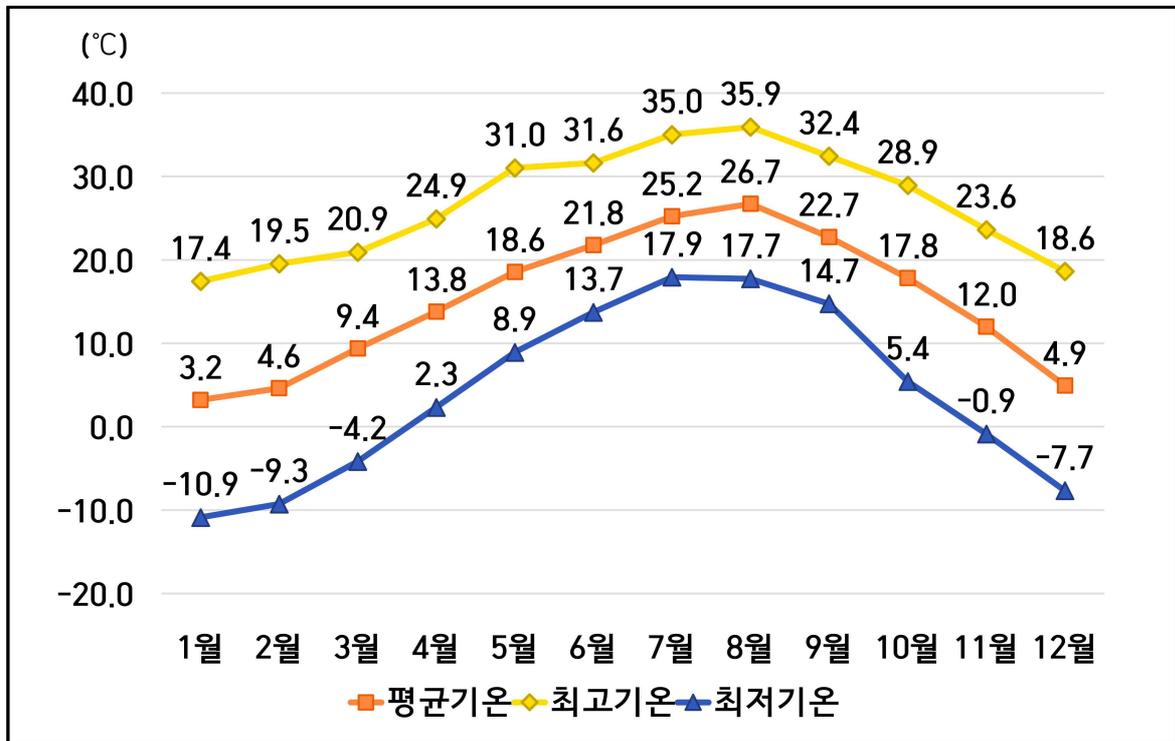
다. 기온

여수시의 연평균기온은 15.1℃로 조사되었으며, 월별 평균기온은 8월에 35.9℃로 가장 높고 1월에 -1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3> 월별 기온

구 분	2013년 ~ 2022년 기온 (°C)												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3.2	4.6	9.4	13.8	18.6	21.8	25.2	26.7	22.7	17.8	12.0	4.9	15.1
최 고	17.4	19.5	20.9	24.9	31.0	31.6	35.0	35.9	32.4	28.9	23.6	18.6	35.9
최 저	-10.9	-9.3	-4.2	2.3	8.9	13.7	17.9	17.7	14.7	5.4	-5.4	-7.7	-10.9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그림 2.1.4-1) 여수시 월별 기온 변화 추이(2013~2022)

라. 강수량

최근 10년간(2013~2022) 여수시의 연간 총강수량은 평균 1,416.2mm로 조사되었으며, 월별 최대강수량은 8월 662.2mm, 월별 최소강수량은 1월 0mm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평

균 강수량은 봄 173.4mm, 여름 421.5mm, 가을 657.9mm, 겨울 95.3mm로 나타났다. 연간 강수량의 46.4%를 차지하는 657.9mm가 여름에서 초가을인 7월~ 9월 사이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9개월간은 758.3mm로 53.5%의 강우가 발생하여 여름과 초가을에 강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4> 계절별 강수량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간
강수량(mm)	173.4	421.5	657.9	95.3	1,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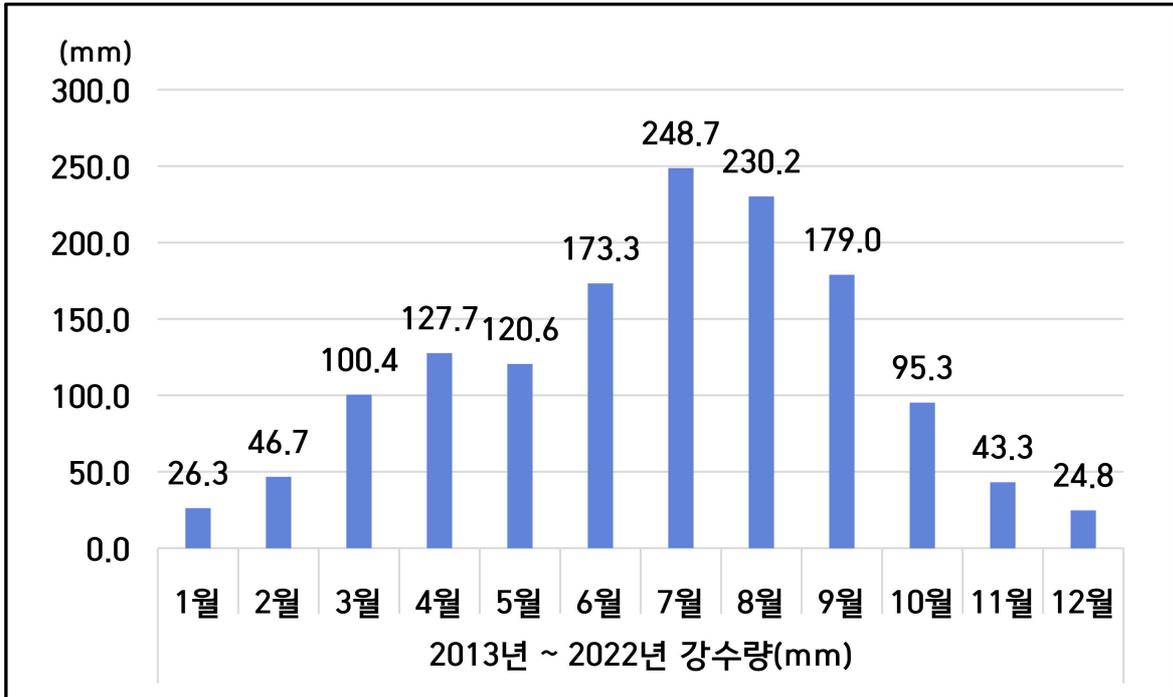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표 2.1.4-5> 연간 강수량 추이

(단위: mm)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13	15.6	116.3	79.9	99.1	234.2	108.4	127.7	246.7	70.1	48.1	52.9	1.7	1,200.80
2014	11.4	19.7	127	63.9	109.8	127.9	160.5	662.2	86.9	131.7	61.5	12.8	1575.30
2015	36.6	42.7	101.4	252.9	146.1	82.6	217	130.8	88.8	43.9	74.9	32.8	1,250.50
2016	51.2	65.5	86.8	301	124.3	162.2	157.8	33.8	317.2	150	77.7	89.3	1,616.60
2017	11.5	45.1	14.7	62.8	49.5	81.6	113.5	311.6	163.9	148.3	0.6	16.5	1,019.60
2018	24.7	33.4	223.8	125.3	134.5	291.8	149.7	89.8	281.4	146.6	32.2	45.5	1,578.70
2019	12.9	46.4	63.3	93.6	132.4	289.2	303.5	66.5	280.1	198.7	14.7	28.6	1,529.90
2020	81.3	61.3	52.3	80.5	139.4	367	552	180.1	181.2	27.6	15.4	13.8	1,751.90
2021	17.3	36.7	106	95.3	134.9	130.2	445.3	369.7	144.7	45.4	43	2.7	1,571.20
2022	0	0	149.3	102.2	0.6	91.7	260.1	210.8	175.6	13	59.6	4.5	1,067.40
평균	26.3	46.7	100.4	127.7	120.6	173.3	248.7	230.2	179	95.3	43.3	24.8	1,416.20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그림 2.1.4-2) 월별 강수량변화(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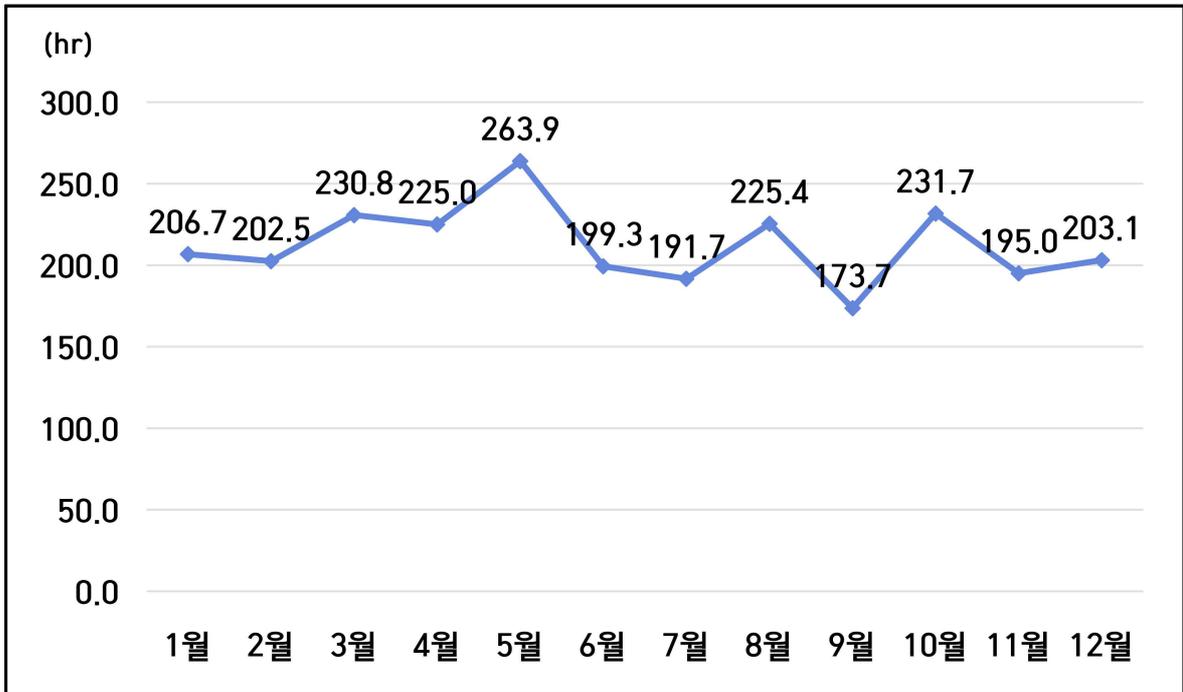
바. 일조시간

여수시의 지난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일조시간은 총 2,548.8hr이며, 월별로는 5월에 263.9hr로 가장 길고, 9월에 173.7hr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6> 월별 일조시간 평균

구분	2012년 ~ 2021년 일조시간(hr)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조시간	206.7	202.5	230.8	225.0	263.9	199.3	191.7	225.4	173.7	231.7	195.0	203.1	2,548.8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그림 2.1.4-3) 월별 일조시간(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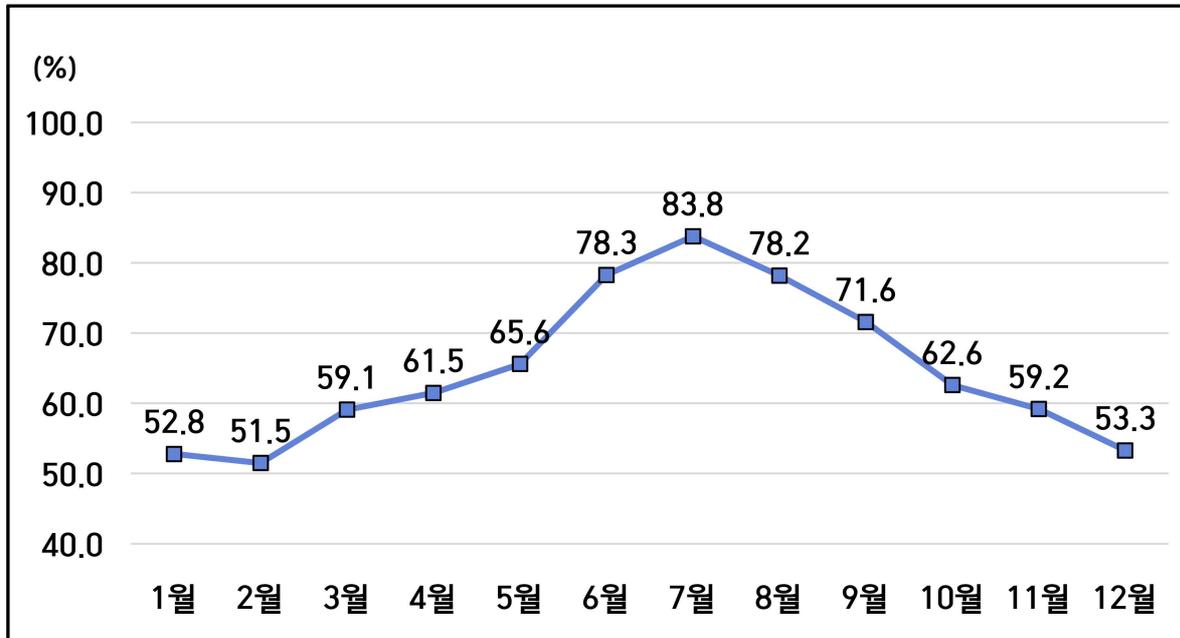
사. 상대습도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상대습도는 64.8%이며, 월별로는 7월이 83.8%로 가장 습하고 2월이 51.5%로 가장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7> 월별 상대습도

구분	2013년 ~ 2022년 상대습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대습도	52.8	51.5	59.1	61.5	65.6	78.3	83.8	78.2	71.6	62.6	59.2	53.3	64.8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그림 2.1.4-4) 월별 상대습도(2013~2022)

마. 풍속 및 풍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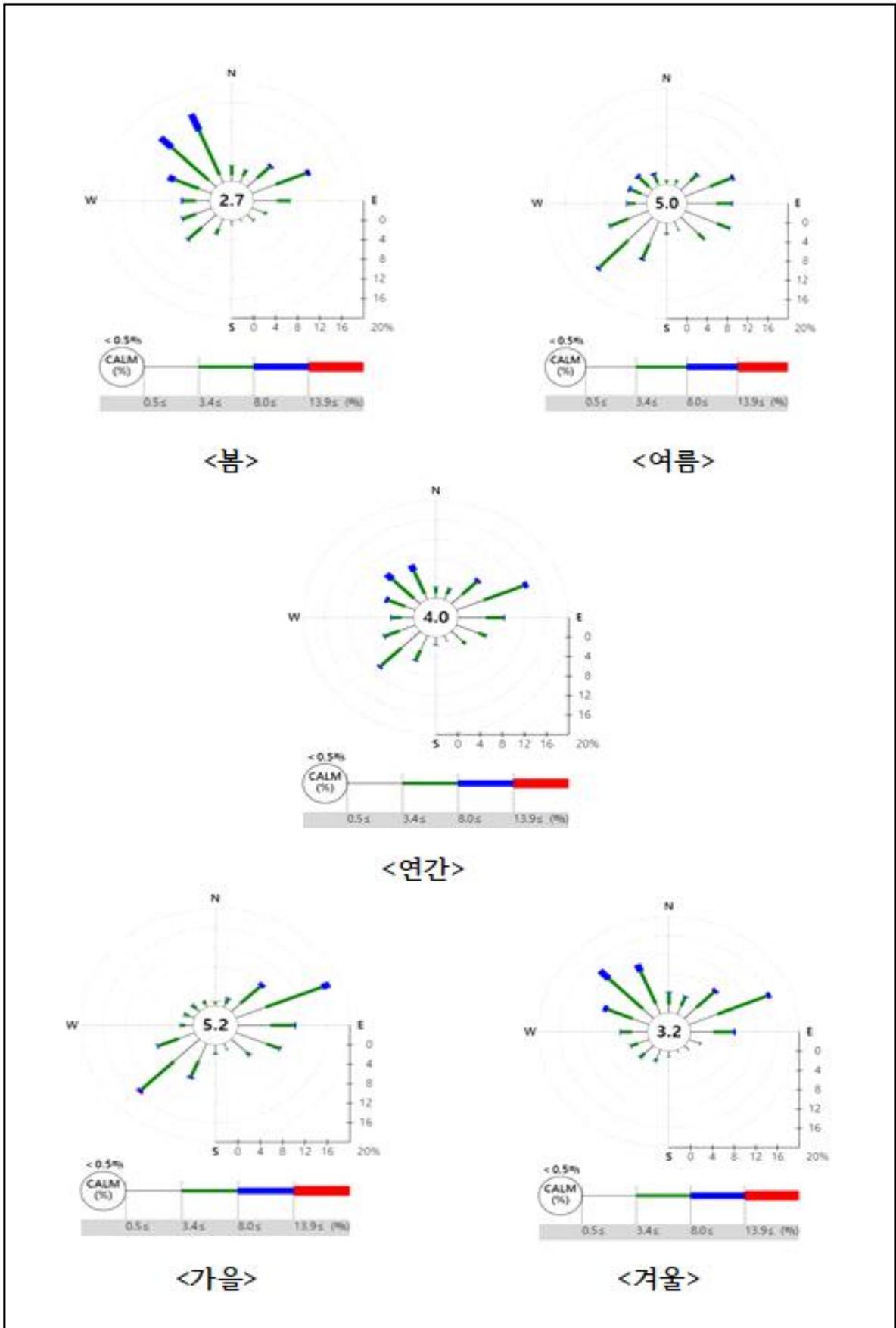
최근 10년간(2013~2022) 여수시에서 측정된 연간 평균풍속은 3.9m/s로 조사되었으며, 10년간 월별 평균 최대풍속은 2월의 4.6m/s, 월별 평균 최소풍속은 6월의 3.0m/s로 조사되었다.

<표 2.1.4-8> 월별 평균 풍속

(단위:m/s)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13년	4.6	4.7	4.2	4.7	3.3	2.6	4.3	2.8	3.1	4.4	4.3	4.9	4.0
2014년	3.6	4.7	4.2	3.5	3.8	3.3	3.3	4.5	3.4	4.4	3.7	4.8	3.9
2015년	4.9	4.8	3.9	3.7	3.0	2.6	4.1	3.1	4.4	3.4	4.1	4.4	3.9
2016년	4.9	4.9	3.6	3.5	3.0	2.8	2.8	3.4	4.2	4.4	4.3	4.7	3.9
2017년	5.0	5.2	3.8	3.6	3.4	3.0	2.8	3.5	4.0	4.9	3.7	4.2	3.9
2018년	4.6	3.9	4.5	4.1	3.6	3.1	3.4	4.0	4.3	3.9	2.8	4.4	3.9
2019년	4.3	3.8	4.4	3.6	3.3	2.7	3.5	3.2	4.0	4.5	3.8	4.2	3.8
2020년	4.7	4.3	4.2	4.7	3.4	2.9	2.9	3.0	4.2	3.9	4.0	4.0	3.9
2021년	4.3	4.8	3.9	4.1	3.9	2.7	3.6	3.6	4.6	3.3	3.6	4.4	3.9
2022년	4.2	4.9	3.9	3.3	3.4	3.8	3.3	3.8	4.8	4.4	3.7	4.5	4.0
평균	4.5	4.6	4.1	3.9	3.4	3.0	3.4	3.5	4.1	4.2	3.8	4.5	3.9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3~2022, 기상청



(그림 2.1.4-5) 바람장미도(2013~2022)

2.2 사회 및 경제환경

2.2.1 행정구역 현황

2021년 말 기준으로 여수시의 총 면적은 512.2km²으로 1개 읍 6개 면, 212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1-1〉 여수시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구성비(%)	읍	면	리		반
					통	리	
2021	512.2	100.0	1	6	479	212	4,309
돌 산 읍	72.1	14.08	1	-	-	44	171
소 라 면	60.6	11.83	-	1	-	46	221
울 촌 면	50	9.76	-	1	-	37	91
화 양 면	70.1	13.69	-	1	-	31	88
남 면	42.6	8.32	-	1	-	24	118
화 정 면	26.3	5.13	-	1	-	20	72
삼 산 면	27.6	5.39	-	1	-	10	80
동 문 동	0.9	0.18	-	-	17	-	140
한 려 동	1	0.20	-	-	11	-	89
중 앙 동	0.5	0.10	-	-	14	-	132
총 무 동	1.4	0.27	-	-	16	-	102
광 림 동	3.4	0.66	-	-	15	-	115
서 강 동	0.6	0.12	-	-	10	-	87
대 교 동	1.6	0.31	-	-	15	-	144
국 동	1.5	0.29	-	-	27	-	173
월 호 동	6.8	1.33	-	-	16	-	103
여 서 동	2.6	0.51	-	-	31	-	263
문 수 동	2.2	0.43	-	-	37	-	301
미 평 동	3.1	0.61	-	-	20	-	146
둔 덕 동	4.1	0.80	-	-	18	-	126
만 덕 동	16	3.12	-	-	20	-	157
쌍 봉 동	7.1	1.39	-	-	69	-	419
시 전 동	6.7	1.31	-	-	68	-	525
여 천 동	7.5	1.46	-	-	38	-	285
주 삼 동	11.6	2.26	-	-	19	-	99
삼 일 동	72.8	14.21	-	-	12	-	33
묘 도 동	11.5	2.25	-	-	6	-	12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2021년 기준 여수시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임야 지역이 299.8km²(58.5%)로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내었고, 전 63.2km²(12.3%), 답 38.4km²(7.5%), 대지 24.6km²(4.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2.2-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공 장	도 로	하천	잡종지	기 타
면적(km ²)	512.3	63.2	38.4	299.8	24.6	21.0	23.6	2.7	12.7	26.4
구성비	100.0	12.3	7.5	58.5	4.8	4.1	4.6	0.5	2.5	5.2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3 도시계획 현황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29.5%로, 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6.3%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순으로 분포한다.

〈표 2.2.3-1〉 용도지역 결정현황

(단위: km²)

도시지역					총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25.6	3.0	59.0	215.0	345.1	
비도시지역					1,025.4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		
69.4	71.2	539.7	680.3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4 인구현황

가. 등록인구 추이

2021년 말 기준 인구는 281,977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인 총 276,762인, 외국인 총 5,215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대수는 128,169세대로 조사되었으며, 세대당 평균 인구수는 2.0명을 나타냈다. 인구추세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4-1〉 인구현황

구 분	세대수	총계	등 록 인 구						세대당 인구
			한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114,364	294,565	291,366	147,539	143,827	3,199	2,008	1,191	2.6
2014	116,100	294,459	290,900	147,346	143,554	3,559	2,379	1,180	2.5
2015	117,602	294,073	290,168	147,088	143,080	3,905	2,639	1,266	2.5
2016	118,910	293,036	288,988	146,565	142,423	4,048	2,768	1,280	2.4
2017	119,684	290,528	286,382	145,122	141,260	4,146	2,900	1,246	2.4
2018	120,810	287,868	283,300	143,802	139,498	4,568	3,254	1,314	2.3
2019	123,677	287,410	282,786	143,791	138,995	4,624	3,268	1,356	2.3
2020	126,988	284,866	280,242	142,995	137,247	4,624	3,251	1,373	2.2
2021	128,169	281,977	276,762	141,074	135,688	5,215	3,650	1,565	2.2
평균	120,700	289,865	285,655	145,655	145,036	4,210	2,902	1,308	2.0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나.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2021년 여수시 인구는 281,977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전동이 38,637명(13.2%)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쌍봉동이 32,149명(11.5%)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소라면, 문수동, 여천동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세대수	등 록 인 구			세대당 인구
		총계	남	여	
여수시	128,169	281,977	144,724	137,253	2.2
돌 산 읍	6,717	13,894	7,432	6,462	2.0
소 라 면	9,381	21,653	11,047	10,606	2.3
울 촌 면	3,294	6,267	3,271	2,996	1.9
화 양 면	3,563	6,565	3,432	3,133	1.8
남 면	1,669	2,849	1,492	1,357	1.7
화 정 면	1,284	2,176	1,111	1,065	1.7
삼 산 면	1,269	2,101	1,209	892	1.7
동 문 동	2,552	4,637	2,341	2,296	1.8
한 려 동	1,767	3,096	1,537	1,559	1.8
중 양 동	2,315	4,345	2,204	2,141	1.9
충 무 동	2,202	3,931	2,028	1,903	1.8
광 림 동	3,189	6,078	3,145	2,933	1.9
서 강 동	1,878	3,657	1,796	1,861	1.9
대 교 동	3,011	5,514	2,893	2,621	1.8
국 동	5,297	11,558	5,979	5,579	2.2
월 호 동	2,886	7,007	3,610	3,397	2.4
여 서 동	7,984	18,442	9,097	9,345	2.3
문 수 동	9,546	21,291	10,765	10,526	2.2
미 평 동	5,879	11,788	6,344	5,444	2.0
둔 덕 동	4,090	10,292	5,166	5,126	2.5
만 덕 동	4,516	11,022	5,574	5,448	2.4
쌍 봉 동	13,732	32,149	16,460	15,689	2.4
시 전 동	14,732	38,637	19,426	19,211	2.6
여 천 동	10,446	21,278	11,216	10,062	2.0
주 삼 동	3,130	8,183	4,176	4,006	2.6
삼 일 동	1,280	2,410	1,367	1,043	1.9
묘 도 동	616	1,158	606	552	1.9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5 산업 및 경제 현황

2021년 말 기준으로 33,78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그 종사자 수는 144,58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순으로 많은 인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1>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인)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33,780	144,584	정보통신업	162	900
농업, 임업 및 어업	70	1,706	금융 및 보험업	298	3,259
광업	5	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7	2,759
제조업	1,907	25,3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09	3,2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7	1,2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5	7,6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130	1,7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9	4,335
건설업	2,687	21,609	교육서비스업	1,207	7,523
도매 및 소매업	8,293	17,0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7	12,443
운수 및 창고업	4,308	10,9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97	2,202
숙박 및 음식점업	6,948	15,3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354	5,335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6 도로 및 교통 현황

여수시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지역 간 도로의 총연장은 1,625,300m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포장연장이 1,162,880m, 비포장연장이 296,800m, 미개통 연장이 165,620m로 포장률은 72%이다.

〈표 2.2.6-1〉 주요 도로현황

(단위 : m)

구 분	합 계	포 장	포장률	비포장	미개통	미개통
합 계	1,625,300	1,162,880	72%	296,800	-	165,620
고속도로	-	-	-	-	-	-
일반국도	127,220	109,880	86%	-	-	17,340
지방도	84,180	60,000	71%	6,600	-	17,580
군도	215,300	162,800	76%	48,500	-	4,000
농어촌도로	770,400	128,700	35%	235,434	-	-
도시계획도로	828,200	701,500	85%	-	-	126,700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2.7 재정현황

2021년 기준으로 여수시 예산현액은 1,862,38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입 1,938,253백만원 세출 1,560,346백만원 잉여 377,906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예산결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2.2.7-1〉 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잉 여
2017년	1,402,484	1,449,123	1,050,897	398,226
2018년	1,707,994	1,743,263	1,041,470	701,793
2019년	1,969,380	2,008,419	1,417,937	590,482
2020년	1,917,978	1,956,347	1,560,161	396,187
2021년	1,862,380	1,938,253	1,560,346	377,906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2.3 환경기초시설 현황

2.3.1 하수도

2021년 말 기준으로 여수시의 하수처리인구는 총 281,977인으로서 총인구 대비 하수도 보급률은 87.8%로 나타났다.

〈표 2.3.1-1〉 여수시 하수도현황

구분	총인구 (인)	하수처리인구(인)				공공하수처리구역 보급률(%)
		계	물리적(1차)	생물학적(2차)	고도(3차)	
여수시	281,977	247,594	-	-	247,594	87.8

자료 : 2021 하수도통계, 2022, 환경부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021년 말 기준으로 여수시 하수처리시설은 총 32개소가 있으며, 그 가운데 시설용량이 250m³/일 이상인 시설은 4개소로 조사되었다.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군내처리시설, 임포처리시설, 우학처리시설을 비롯하여 28개소가 있으며 그 중 군내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240.0m³/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1-2〉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 m³/일)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량	위 치	가동개시년
총계	114,270.0	86,676.0	-	-
여수처리시설	110,000.0	83,790.0	신월로 284-1(웅천동)	2005.01.01
울촌처리시설	750.0	484.0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모래목길 115	2018.06.19
거문처리시설	470.0	334.0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76-1	2003.12.16
작금처리시설	250.0	147.0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847-9	2006.01.19
기타	2,800.0	1,9	-	-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1년 기준), 2023, 여수시

※ 기타는 시설용량이 250m³/일 미만인 시설(28개소)을 포함한다.

나. 분뇨처리시설

2021년 말 기준으로 여수시의 분뇨처리시설은 1개소이며 시설용량은 330.0㎥/일, 일일 처리량은 140.3㎥/일로 조사되었다.

〈표 2.3.1-3〉 여수시 분뇨처리시설 현황

구분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처리공법	연계처리장
여수시	신월로 284-1(웅천동)	330.0	140.3	전처리	여수

자료 : 2021 하수도통계, 2022, 환경부

2.3.2 폐기물 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여수시에는 월내매립장, 만흥매립장 총 2개소가 운영중이다. 매립장의 총 매립용량은 4,755,000㎥이며 두 시설의 사용가능기간은 월내매립장 2024년, 만흥매립장 2028년까지이다.

〈표 2.3.2-1〉 폐기물 매립시설

시설명	소재지	매립용량 (㎥)	기매립량 (㎥)	2020년 매립량(㎥)	사용가능기간
월내매립장 ¹⁾	진달래길 310-157	1,500,000	1,380,000	30,000	1994-2024
만흥매립장	충민사길 252	3,255,000	2,450,000	180,000	1997-2028

자료 :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2, 환경부(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

1) 기존도서(여수시 월내 위생매립장 매립작업설계도서(2002.01)) 및 현황측량(2021.09) 기준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제외

나. 소각시설

여수시에는 소각시설 1개소가 2010년도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시설용량은 100톤/일로 조사되었다.

〈표 2.3.2-2〉 폐기물 소각시설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소각방식	운영방식	2020년 처리량 (톤/년)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 (월내동)	100	일반소각	연속식	36,429.1

자료 :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2, 환경부(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

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여수시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퇴비화)과 재활용선별시설이 각각 1개소씩 운영중이며, 시설용량은 90톤/일, 24톤/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되었으며, 운영사는 (주)여수엑스포 환경이다.

〈표 2.3.2-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2020년 처리량 (톤/년)	가동일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여수시 진달래길 310 일원	90	35,043.7	2008.08.28
재활용선별시설		24	5,669.0	2010.11.15

자료 :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2, 환경부(전국 폐기물 처리업체현황)

제3장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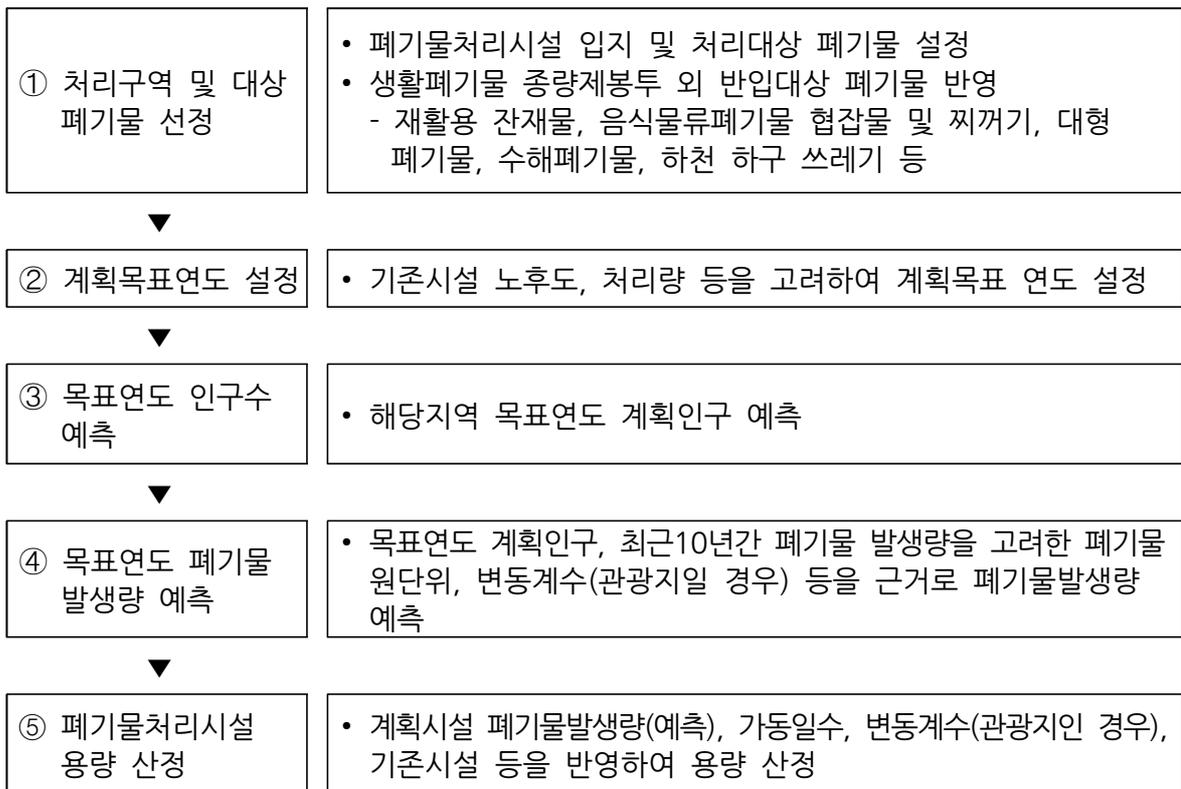
- 3.1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 설정
- 3.2 장래폐기물 발생량 예측
- 3.3 소각처리대상량 산정
- 3.4 시설규모 산정

제 3 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1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 설정

3.1.1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산정 절차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계획인구, 계획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에 제시한 절차에 따라 예측한다.



자료 : 2022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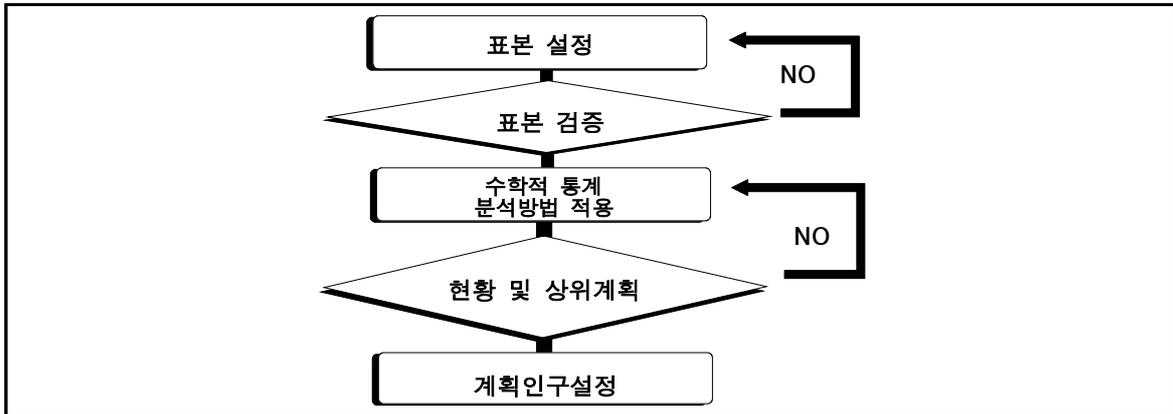
3.1.2 계획목표년도 설정

<표 3.1.2-1> 계획목표년도 설정

구 분	해당년도	비 고
가동지표년도	2027년	시설 준공
중기목표년도	2032년	시설가동 5년차
	2037년	시설가동 10년차
장기목표년도	2042년	시설가동 15년차

3.1.3 계획인구 설정

본 과업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인구 추이를 분석하는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지수함수법 등에 의한 수학적 통계분석 방법과 자연적·사회적 인구증감을 연령, 성별등을 포괄하는 인구전망법인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 을 통해 장래인구를 예측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현황 및 상위계획, 사회적 인구유입 등과 종합 비교, 검토하여 계획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설정하였다.



(그림 3.1.3-1) 계획인구 설정 흐름

가. 과거 인구변화 추이

수학적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표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인구현황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인구추이를 표본으로 삼아 수학적 통계 분석 방법에 의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였다. 여수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 284,866명이며,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평균 -0.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1> 여수시 과거 인구현황

년 도	인구수(명)	세대수(세 대)	세대당인구수(명/세대)	인구증가율(%)	비 고
2011	295,538	111,921	2.64	-0.05%	
2012	295,215	112,907	2.61	-0.11%	
2013	294,565	114,364	2.58	-0.22%	
2014	294,459	116,100	2.54	-0.04%	
2015	294,073	117,602	2.50	-0.13%	
2016	293,036	118,910	2.46	-0.35%	
2017	290,528	119,684	2.43	-0.86%	
2018	287,868	120,810	2.38	-0.92%	
2019	287,410	123,677	2.32	-0.16%	
2020	284,866	126,988	2.24	-0.89%	

자료 : 여수통계연보(2020년 기준), 2022, 여수시

나. 수학적 통계분석에 의한 장래인구 예측

과거인구추이를 이용하여 수학적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10년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인구추이를 표본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1) 등차급수법

연평균 인구증가수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인구에 매년의 일정 인구수를 가산하는 방법이다.

$$P_{o+n} = P_o + na$$

여기서, P_{o+n} = n 년후 인구

P_o = 기준연도 인구

n = 기준연도로부터 경과년수

a = 연평균 인구증가수($=\{P_{o+n} - P_o\}/n$)

2) 등비급수법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기존의 도시보다는 신흥 공업도시같은 급성장 도시의 인구추정에 적합하다.

$$P_{o+n} = P_o(1+r)^n$$

여기서, P_{o+n} = n 년후 인구

P_o = 기준연도 인구

n = 기준연도로부터 경과년수

r = 연평균 인구증가율($=\{P_{o+n}/P_o\}^{1/n}-1$)

3) 최소자승법

연평균 증가 인구수를 바탕으로 하고, 몇 개의 자료에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의 인구변동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

$$P_x = mx + b$$

여기서, P_x = x 연도 인구

x = 인구예측 년도

m, b = 상수

$$m = \frac{N\sum XY - \sum X\sum Y}{N\sum X^2 - \sum X\sum X} \quad b = \frac{\sum X^2\sum Y - \sum X\sum XY}{N\sum X^2 - \sum X\sum X}$$

(4) 지수함수법

복리계산형태로써 일정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측함을 뜻하나, 지수함수법의 경

우는 인구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원리 밑에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Px = bmx$$

여기서, $Px = x$ 년도 인구

$x =$ 인구예측 년도 $m, b =$ 상수

수학적 통계분석 방법에 의해 각 지자체의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으며 여수시의 경우 수학적 인구예측 평균값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3.1.3-2> 수학적 통계분석 방법에 의한 인구예측

(단위 : 인)

연 도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함수	평 균
2021	282,367	282,372	284,559	284,952	283,562
2022	281,823	281,834	284,157	284,552	283,092
2023	281,280	281,298	283,755	284,153	282,621
2024	280,736	280,763	283,353	283,754	282,151
2025	280,193	280,229	282,951	283,355	281,682
2026	279,649	279,696	282,549	282,958	281,213
2027	279,106	279,163	282,147	282,560	280,744
2028	278,562	278,632	281,745	282,164	280,276
2029	278,019	278,102	281,343	281,767	279,808
2030	277,476	277,573	280,941	281,372	279,340
2031	276,932	277,045	280,539	280,977	278,873
2032	276,389	276,518	280,137	280,582	278,406
2033	275,845	275,992	279,735	280,188	277,940
2034	275,302	275,466	279,333	279,795	277,474
2035	274,758	274,942	278,931	279,402	277,008
2036	274,215	274,419	278,529	279,010	276,543
2037	273,671	273,897	278,127	278,618	276,078
2038	273,128	273,376	277,725	278,227	275,614
2039	272,585	272,856	277,324	277,836	275,150
2040	272,041	272,337	276,922	277,446	274,686
2041	271,498	271,818	276,520	277,057	274,223
2042	270,954	271,301	276,118	276,668	273,760

다. 조성법에 의한 예측

1)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조성법은 성별, 연령별로 출산율, 사망률, 이동률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t기의 n세 성별 인구를 t+1기의 n+1세 성별 인구로 변환시킴으로써 인구 전망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어떤 지역의 인구증가율 변화를 성별,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 및 이동률의 추세적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인구의 성, 연령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 모두를 감안하는 방법으로, 인구의 자연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인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피라미드 구조까지 얻어 낼 수 있다.

$$P_{t+1} = CSM \times P_t$$

(2n×1) = (2n×2n)(2n×1)

여기서, P_t : t시점의 인구수
 CSM : 성별로 구분된 집단생존행렬

$$\begin{bmatrix} M_{t+1} \\ F_{t+1} \end{bmatrix} = \begin{bmatrix} SM & BM \\ ZM & SF \end{bmatrix} \times \begin{bmatrix} M_t \\ F_t \end{bmatrix}$$

각 행렬 구조는 다음과 같음

$$M_{t+1} = \begin{bmatrix} M_{t+1}^1 \\ M_{t+1}^2 \\ \vdots \\ M_{t+1}^{n-1} \\ M_{t+1}^n \end{bmatrix}, F_{t+1} = \begin{bmatrix} F_{t+1}^1 \\ F_{t+1}^2 \\ \vdots \\ F_{t+1}^{n-1} \\ F_{t+1}^n \end{bmatrix}$$

$$SM = \begin{bmatrix} 0 & \dots & 0 & 0 & 0 \\ sm^1 & \dots & 0 & 0 & 0 \\ \cdot & \dots & \cdot & \cdot & \cdot \\ 0 & \dots & sm^{n-2} & 0 & 0 \\ 0 & \dots & 0 & sm^{n-1} & sm^n \end{bmatrix}, BM = \begin{bmatrix} \bar{a}ab^1 & \dots & \bar{a}ab^{n-2} & \bar{a}ab^{n-1} & \bar{a}ab^n \\ 0 & \dots & 0 & 0 & 0 \\ \cdot & \dots & \cdot & \cdot & \cdot \\ 0 & \dots & 0 & 0 & 0 \\ 0 & \dots & 0 & 0 & 0 \end{bmatrix},$$

$$ZM = \begin{bmatrix} 0 & \dots & 0 & 0 & 0 \\ 0 & \dots & 0 & 0 & 0 \\ \cdot & \dots & \cdot & \cdot & \cdot \\ 0 & \dots & 0 & 0 & 0 \\ 0 & \dots & 0 & 0 & 0 \end{bmatrix}, SF = \begin{bmatrix} \bar{b}ab^1 & \dots & \bar{b}ab^{n-2} & \bar{b}ab^{n-1} & \bar{b}ab^n \\ sf^1 & \dots & 0 & 0 & 0 \\ \cdot & \dots & \cdot & \cdot & \cdot \\ 0 & \dots & sf^{n-2} & 0 & 0 \\ 0 & \dots & 0 & sf^{n-1} & sf^n \end{bmatrix}$$

여기서, M_{t+1} : t+1에서 남자의 코호트¹⁾별 인구수,
 F_{t+1} : t+1에서 여자의 코호트별 인구수,
 SM : 남자의 코호트별 생존율을 나타내는 행렬,
 BM : 가임 여성의 코호트별 남자 출산율을 나타내는 행렬,
 ZM : 모든 요소가 0인 행렬,
 SF : 여성의 코호트별 여자 출산율과 생존율을 나타내는 행렬,
 a,b : 출생시 남자, 여자의 성비,
 $\bar{a} = \frac{a}{a+b}, \bar{b} = \frac{b}{a+b}$.

2) 사회적 유입인구 산정

조성법에 의하여 예측한 인구수는 자연증감에 따른 인구의 증감을 예측한 결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유입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여수시의 장래 사회적 증가인구는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의 사회적 증가인구를 적용하였으며, 개발계획 인구유입은 단계별로 5년간 균등하게 유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수시는 주택개발사업(17개), 산업단지(5개) 및 관광단지(3개)를 고려하여 사회적 증가인구를 산정하였으며 그 인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3-3> 여수시 사회적 유입인구 검토

(단위 : 인)

구 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비고
계	8,574	23,311	34,863	46,841	
주택건설사업(17개)	5,148	14,131	18,811	21,870	
산업단지(5개)	614	4,488	11,360	20,279	
관광단지(3개)	2,812	4,692	4,692	4,692	

자료 :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시

조성법에 의한 여수시의 인구 추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2027년에 284,760인, 2032년에 286,138인, 2037년에 279,084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3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코호트 :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因子)를 공유하는 집단.

〈표 3.1.3-4〉 조성법에 의한 인구예측

(단위 : 인)

연 도	조성법	비 고
2021	279,674	
2022	280,358	
2023	281,515	
2024	282,762	
2025	283,972	
2026	284,463	
2027	284,760	
2028	285,075	
2029	285,480	
2030	285,864	
2031	286,216	
2032	286,138	
2033	285,906	
2034	285,563	
2035	285,097	
2036	282,163	
2037	279,084	
2038	276,166	
2039	273,070	
2040	269,713	
2041	266,386	
2042	262,921	

라. 상위계획 검토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장래인구계획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두 계획의 계획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1.3-5> 여수시 상위계획 검토

(단위 : 인)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294,000	307,000	324,000	340,000	-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94,000	307,000	324,000	340,000	340,000

자료 :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시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9, 여수시

※ 각 계획인구는 계획인구 적용치에 탄력적 대응인구(5~ 10%)를 반영하여 산정함

마. 장래 계획인구 산정

앞서 검토한 조성법에 의한 인구 추정, 수학적 방법에 의한 인구 추정방법, 상위 및 관련 계획상의 장래 인구 지표의 인구 전망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여수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확장,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사회적 유입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상위계획상의 계획인구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여수시의 출산율, 사망률, 사회적 이동률의 지역적 성향을 잘 반영한 조성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도서 지역이 제외되므로 3개 면의 인구 비율을 제외한 인구를 본 계획에 적용하였다.

<표 3.1.3-6> 장래인구 적용

(단위: 인)

년도	수학적방법에 의한 예측치				수학적 방법 (평균)	조성법	평균	대상인구 ¹⁾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함수				
2027년	279,106	279,163	282,147	282,560	280,744	284,760	282,752	278,321
2032년	276,389	276,518	280,137	280,582	278,406	286,138	282,272	279,668
2037년	273,671	273,897	278,127	278,618	276,078	279,084	277,581	272,773
2042년	270,954	271,301	276,118	276,668	273,760	262,921	268,341	256,976

주1) 대상인구는 조성법 인구에서 자체처리 도서지역의 인구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함

<표 3.1.3-7> 계획 목표연도 계획인구 검토

(단위 : 인)

계획목표연도	수학적 방법 (평균)	상위계획	조성법	대상인구 ¹⁾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21	283,562	-	279,674	273,350
2022	283,092	-	280,358	274,019
2023	282,621	-	281,515	275,149
2024	282,151	-	282,762	276,368
2025	281,682	307,000	283,972	277,551
2026	281,213	-	284,463	278,031
2027	280,744	-	284,760	278,321
2028	280,276	-	285,075	278,629
2029	279,808	-	285,480	279,025
2030	279,340	324,000	285,864	279,400
2031	278,873	-	286,216	279,744
2032	278,406	-	286,138	279,668
2033	277,940	-	285,906	279,441
2034	277,474	-	285,563	279,106
2035	277,008	340,000	285,097	278,650
2036	276,543	-	282,163	275,783
2037	276,078	-	279,084	272,773
2038	275,614	-	276,166	269,921
2039	275,150	-	273,070	266,895
2040	274,686	340,000	269,713	263,614
2041	274,223	-	266,386	260,362
2042	273,760	-	262,921	256,976

주1) 대상인구 = 조성법인구 * (100% - (자체처리지역 인구 5년 평균 비율(%)))

<표 3.1.3-8> 자체 처리지역 인구 비율 산정

(단위 : 인)

구분	여수시	소계	지역구분			비율
			남면	삼산면	화정면	
2017년	286,382	6,670	3,113	2,155	1,402	2.3%
2018년	283,300	6,488	3,038	2,094	1,356	2.3%
2019년	282,786	6,373	2,931	2,112	1,330	2.3%
2020년	280,242	6,247	2,846	2,062	1,339	2.2%
2021년	276,762	6,100	2,738	2,031	1,331	2.2%

자료 : 여수시청 인구통계(연도별 12월 말 기준), 2018~ 2022, 여수시청

3.2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3.2.1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가. 과거 발생원단위 추이

최근 10년간 여수시의 인구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원단위 추이 검토 결과, 불규칙적 증가와 감소를 보였으며, 2020년엔 급감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는 1.360kg/인·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간 평균 발생원단위는 1.471kg/인·일로 산정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1.074kg/인·일, 재활용폐기물 0.068kg/인·일, 음식물류폐기물 0.329kg/인·일로 산정되었다.

<표 3.2.1-1> 과거 발생원단위 변화 추이 (단위 : 톤/일, kg/인·일)

구 분	인구	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2011	287,801	405.8	1.410	311.9	1.084	17.3	0.060	76.6	0.266
2012	287,492	484.5	1.685	382.5	1.330	18.5	0.064	83.5	0.290
2013	286,581	384.4	1.341	291.7	1.018	17.2	0.060	75.5	0.263
2014	291,138	381.7	1.311	282.7	0.971	17.9	0.061	81.1	0.279
2015	289,288	378.2	1.307	277.8	0.960	14.8	0.051	85.6	0.296
2016	286,581	426.7	1.489	278.9	0.973	40.4	0.141	107.4	0.375
2017	285,734	428.7	1.500	310.6	1.087	13.0	0.045	105.1	0.368
2018	288,661	430.5	1.491	292.7	1.014	36.5	0.126	101.3	0.351
2019	285,523	516.3	1.808	394.7	1.382	11.2	0.039	110.4	0.387
2020 ²⁾	282,910	384.8	1.360	259.5	0.917	8.2	0.029	117.1	0.414
10년 평균		422.2	1.470	288.2	1.003	14.8	0.051	94.4	0.329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1~ 2020), 환경부

1) 10년 평균 원단위를 산정하되 일부 일시적인 과다데이터는 제외

· 종량제 2012, 2019년 - 엑스포 개최 및 폐기물 대란

· 재활용품 2016, 2018년 -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등 폐기물대란

2) 2020년부터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혼합배출 외 분리배출 항목 미포함

3.2.2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앞서 결정한 계획인구에 최근 10년 평균 폐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각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 2027년 기준 장래 여수시 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279.2톤/일, 재활용폐기물 14.2톤/일, 음식물류폐기물 91.6톤/일로 산정되었다.

〈표 3.2.2-1〉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단위 : 톤/일)

연도	총 발생량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남은음식물
2021	378.0	274.2	13.9	89.9
2022	379.1	274.9	14.0	90.2
2023	380.5	276.0	14.0	90.5
2024	382.2	277.2	14.1	90.9
2025	383.9	278.4	14.2	91.3
2026	384.6	278.9	14.2	91.5
2027	385.0	279.2	14.2	91.6
2028	385.4	279.5	14.2	91.7
2029	385.9	279.9	14.2	91.8
2030	386.4	280.3	14.2	91.9
2031	386.9	280.6	14.3	92.0
2032	386.8	280.5	14.3	92.0
2033	386.5	280.3	14.3	91.9
2034	386.0	280.0	14.2	91.8
2035	385.4	279.5	14.2	91.7
2036	381.4	276.6	14.1	90.7
2037	377.2	273.6	13.9	89.7
2038	373.3	270.7	13.8	88.8
2039	369.1	267.7	13.6	87.8
2040	364.5	264.4	13.4	86.7
2041	360.2	261.2	13.3	85.7
2042	355.4	257.8	13.1	84.5

3.3 처리대상량 산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산정에 앞서 처리 대상량을 산정한다. 본 과업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전량 반입으로 가정하며,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각각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전량 반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3.1 소각시설 처리대상량

가.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소량 산정

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2020년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반입량 산정 시 과도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예측치를 제외하여 반영하였다. 2020년 이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반입량의 감소 비율은 85.7%로 산정되었다.

<표 3.3.1-1>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소량

(단위 : 톤/년)

구 분	생활폐기물 반입량	평 균	감소비율
2017년	110,136	109,228	85.7%
2018년	106,577		
2019년	110,969		
2020년	91,604	93,595	
2021년	95,586		

자료: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 자료, 여수시

산정된 생활폐기물 감소비율을 종량제봉투폐기물 발생량에 반영하여 소각시설 반입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종량제봉투 반입량은 2027년 239.3톤/일, 2032년 240.4톤/일, 2037년 234.5톤/일, 2042년 220.9톤/일로 예측되었다.

<표 3.3.1-2> 종량제봉투 반입량 산정

(단위 : 톤/일)

연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감소비율	종량제봉투 반입량
2021	274.2	85.7%	235.0
2022	274.9		235.6
2023	276.0		236.5
2024	277.2		237.6
2025	278.4		238.6
2026	278.9		239.0
2027	279.2		239.3
2028	279.5		239.5
2029	279.9		239.9
2030	280.3		240.2
2031	280.6		240.5
2032	280.5		240.4
2033	280.3		240.2
2034	280.0		240.0
2035	279.5		239.5
2036	276.6		237.0
2037	273.6		234.5
2038	270.7		232.0
2039	267.7		229.4
2040	264.4		226.6
2041	261.2		223.8
2042	257.8		220.9

나.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량

재활용선별시설의 잔재물 발생은 운영자료상 잔재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최근 5년 평균 발생비율인 52.3%로 산정되었다. 재활용잔재물은 소각처리, 매립처리 대상으로 성상에 따라 나눠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기존 소각시설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활용선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연성 잔재물로 반영하였다.

<표 3.3.1-3>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비율 산정 (단위 : 톤/일)

구 분	재활용품반입량	잔재물 발생량	비율	평균비율
2017년	2,912.1	1,589.79	54.6%	52.3%
2018년	2,975.2	1,613.68	54.2%	
2019년	4,257.1	2,434.42	57.2%	
2020년	5,456.5	2,765.16	50.7%	
2021년	5,671.8	2,536.28	44.7%	

자료: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 자료, 여수시

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량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잡물은 운영자료상 반입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소각시설 내 반입비율의 최근 5년 평균비율은 12.9%로 산정되었다.

<표 3.3.1-4>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잡물 비율 산정 (단위 : 톤/일)

구 분	음식물류반입량	협잡물 발생량	비율	평균비율
2017년	32,624.7	4,351.79	13.3%	12.9%
2018년	32,193.5	3,887.72	12.1%	
2019년	35,024.5	4,332.94	12.4%	
2020년	35,394.3	4,476.87	12.6%	
2021년	24,436.1	3,377.93	13.8%	

자료: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 자료, 여수시

3.3.2 총 처리대상량 산정

총량제 반입량(생활폐기물 감소량 고려),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을 고려하여 소각대상량을 산정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반입으로 계획하였다.

〈표 3.3.2-1〉 생활폐기물 종류별 처리대상량 예측 (단위 : 톤/일)

연도	총량제반입량	재활용잔재물	음식물협잡물	소각대상량	재활용 발생량	음식물 발생량
2021	235.0	12.9	15.9	263.8	13.9	89.9
2022	235.6	13.0	16.0	264.6	14.0	90.2
2023	236.5	13.0	16.1	265.6	14.0	90.5
2024	237.6	13.0	16.1	266.7	14.1	90.9
2025	238.6	13.1	16.2	267.9	14.2	91.3
2026	239.0	13.1	16.2	268.3	14.2	91.5
2027	239.3	13.1	16.2	268.6	14.2	91.6
2028	239.5	13.1	16.3	268.9	14.2	91.7
2029	239.9	13.1	16.3	269.3	14.2	91.8
2030	240.2	13.1	16.3	269.6	14.2	91.9
2031	240.5	13.2	16.3	270.0	14.3	92.0
2032	240.4	13.2	16.3	269.9	14.3	92.0
2033	240.2	13.2	16.3	269.7	14.3	91.9
2034	240.0	13.1	16.3	269.4	14.2	91.8
2035	239.5	13.1	16.3	268.9	14.2	91.7
2036	237.0	13.0	16.1	266.1	14.1	90.7
2037	234.5	12.9	15.9	263.3	13.9	89.7
2038	232.0	12.8	15.7	260.5	13.8	88.8
2039	229.4	12.6	15.6	257.6	13.6	87.8
2040	226.6	12.4	15.4	254.4	13.4	86.7
2041	223.8	12.3	15.2	251.3	13.3	85.7
2042	220.9	12.1	15.0	248.0	13.1	84.5

3.4 시설용량 산정

3.4.1 월변동계수 산정

각 시설별 반입량의 부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5년(2017년~2021년)의 월변동계수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평균 월변동계수는 각각 소각시설 1.17, 재활용선별시설 1.26, 음식물자원화시설 1.13으로 나타났다.

〈표 3.4.1-1〉 시설별 반입량 부하 검토

(단위 : 톤/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 균
소각시설	최대값	94.4	113.8	131.5	124.6	126.2	-
	평균값	86.7	88.5	104.1	113.6	115	-
	변동계수	1.09	1.29	1.26	1.10	1.10	1.17
재활용 선별시설	최대값	10.8	13.6	16.6	20.3	24.9	-
	평균값	9.4	9.6	13.7	17.5	18.3	-
	변동계수	1.15	1.42	1.21	1.16	1.36	1.26
음식물 자원화 시설	최대값	100	97.4	108.1	110.6	108.9	-
	평균값	89.3	86.6	95.9	96.2	95.9	-
	변동계수	1.12	1.13	1.13	1.15	1.14	1.13

3.4.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용량산정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계획목표년도(시설준공 년도기준)인 2027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각 시설별 가동일수와 변동계수(여유율)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 평균 발생원단위를 사용하였다.

가. 소각시설 시설용량

소각시설 시설용량은 가동일수 300일, 변동계수 1.17을 적용하여 350.0톤/일로 산정하였다. 종량제 봉투 폐기물은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감소량을 제외한 양을 반입 가정하였으며, 재활용 잔재물과 음식물 협잡물은 각 시설 반입량에 소각시설 반입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3.4.2-1〉 소각시설 용량 산정

구 분		2027년	2032년	2037년	2042년
계획인구	인	278,321	279,668	272,773	256,976
발생원단위	kg/인·일	1.003			
총량제발생량	톤/일	279.2	280.5	273.6	257.8
총량제반입량	톤/일	239.3	240.4	234.5	220.9
가동일수	일	300			
변동계수(여유율)	-	1.10			
시설반입량	톤/일	320.2	321.7	313.8	295.7
재활용잔재물	톤/일	13.1	13.2	12.9	12.1
음식물협잡물	톤/일	16.2	16.3	15.9	15.0
소각대상량	톤/일	349.6	351.3	342.6	322.8
규모산정	톤/일	350			

나.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용량

재활용선별시설의 시설용량은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에 가동일수 260일, 변동계수 1.2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재활용폐기물이 전량 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재활용 폐기물의 시설반입량 증가를 고려하여 30.0톤/일로 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3.4.2-2〉 생활자원회수센터 용량 산정

구 분		2027년	2032년	2037년	2042년
계획인구	인	278,321	279,668	272,773	256,976
발생원단위	kg/인·일	0.051			
재활용품발생량	톤/일	14.2	14.3	13.9	13.1
가동일수	일	260			
변동계수(여유율)	-	1.26			
처리대상량	톤/일	25.1	25.3	24.6	23.2
규모산정	톤/일	30			

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설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시설용량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가동일수 300일, 변동계수 1.13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전량 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계획인구의 감소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시설반입량 감소를 고려하여 150.0톤/일로 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3.4.2-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용량 산정

구 분		2027년	2032년	2037년	2042년
계획인구	인	278,321	279,668	272,773	256,976
발생원단위	kg/인·일	0.329			
음식물류발생량	톤/일	91.6	92.0	89.7	84.5
가동일수	일	300			
변동계수(여유율)	-	1.13			
시설반입량	톤/일	125.9	126.5	123.3	116.2
하수슬러지 ¹⁾	톤/일	30.0	30.0	30.0	30.0
처리대상량	톤/일	155.9	156.5	153.3	146.2
규모산정	톤/일	150			

1) 통합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위해 하수슬러지 일부 반영(하수슬러지 반입량 향후 협의 후 확정예정)

제4장 후보지 분석 및 평가

4.1 후보지별 분석

4.2 후보지별 평가

제 4 장 후보지 분석 및 평가

4.1 후보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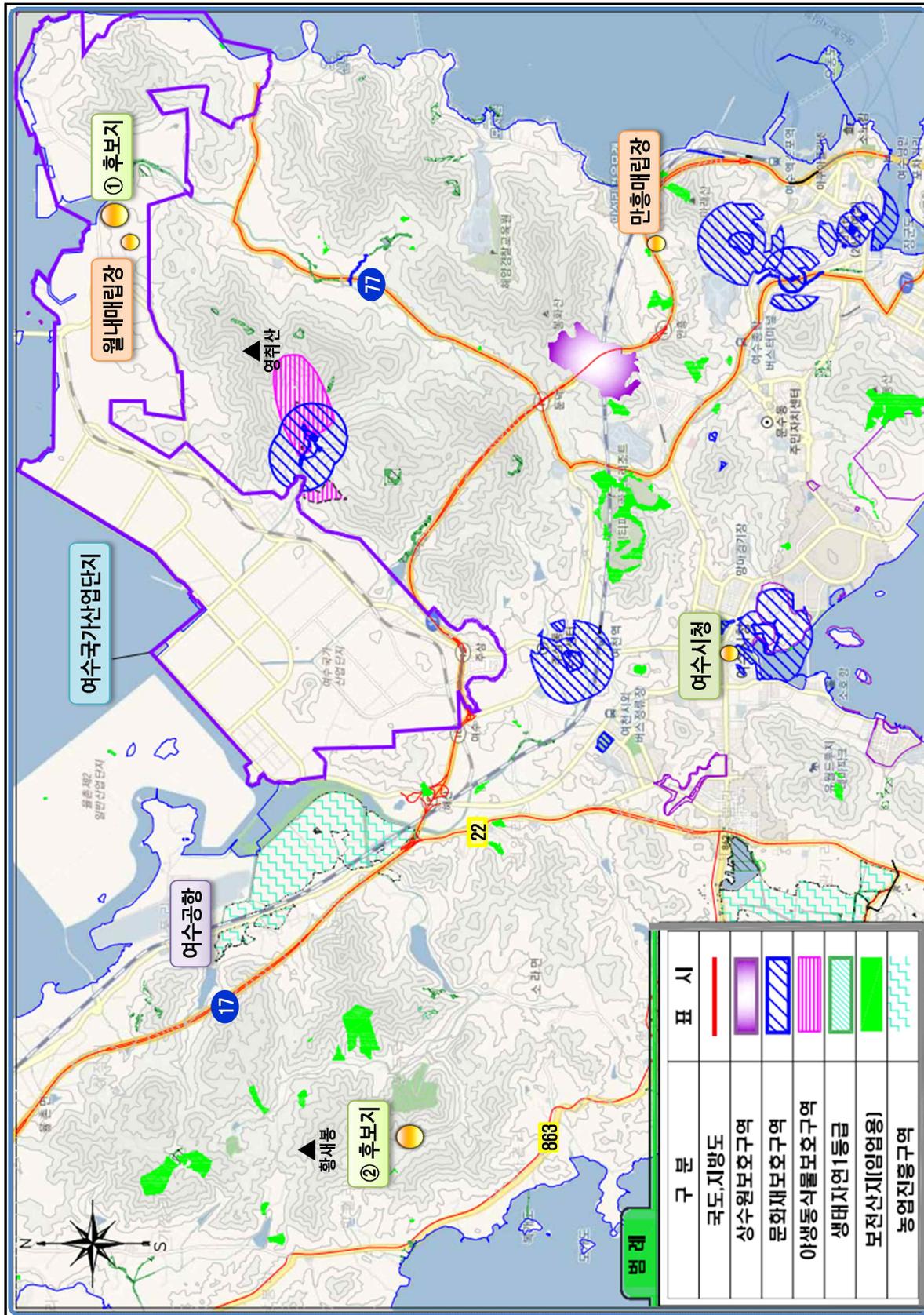
4.1.1 입지후보지 현황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1/25,000 도상자료, 위성사진,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지배제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후보지 2개소 모두 입지배제기준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입지배제기준 5개 분야 15개 항목 적용
- 위성사진, 1/25,000 관계 도상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 등 검토

〈표 4.1.1-1〉 입지배제기준 및 관련자료

입지배제기준		관련법규	배제기준	검토방법
용도 지역	주거지역, 보전관리,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전부 제외	토지이용계획 (국토부)
자연 생태계 보전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전부 제외	생태경관보전지역(환경부)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1등급 제외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문화재보호구역 / 천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전부 제외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국립 및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전부 제외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법	전부 제외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상수 취수원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전부 제외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제외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지형·지질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광역 : 상류 20km 일반 : 상류 10km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기타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	수도법	상류 15km, 하류 1km	상수도통계현황(환경부)
	산악 능선부, 단층지역, 급경사지역	-	경사도 20°이상 제외	도상검토 지질주제도 (지질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	-	300m 이내 제외	도상검토
	군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제 및 제한보호구역 제외	토지이용계획(국토부)



(그림 4.1.1-1) 입지후보지 현황

4.1.2 입지여건

가. 제1후보지

제1후보지는 여수시 월내동 2-2번지 일원이고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접하고 있으며, 후보지를 경계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경사지형이다. 지리적 여건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산단로를 통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본 후보지는 지형조건 및 옹벽설치 등 시설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기존시설을 제외한 가용가능한 필지면적은 113,749㎡이고, 지목은 임야 61.0%, 대지 36.2%, 전/답 0.3%, 기타 2.5%로 검토되었다. 편입 필지 수는 총 11필지로 11필지 모두 시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1) 제1후보지 현황

조망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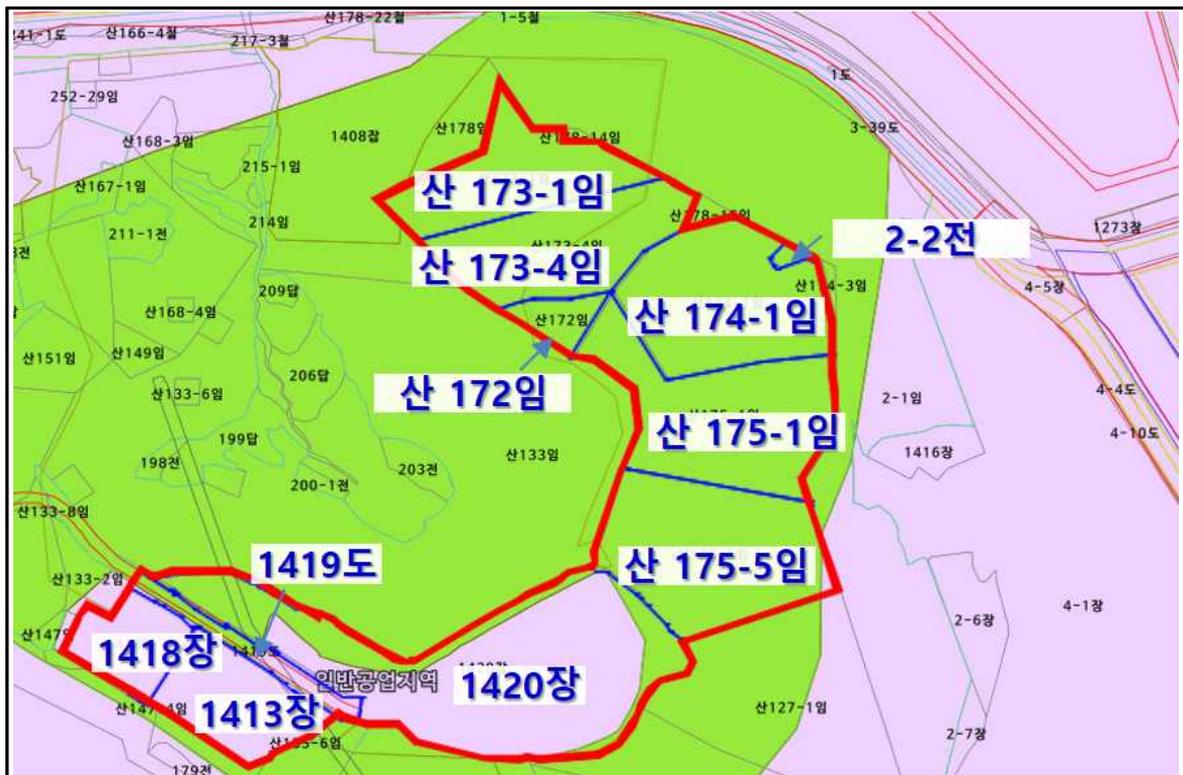
조망점2



(그림 4.1.2-2) 제1후보지 현황

<표 4.1.2-1> 제1후보지 편입용지 현황

NO.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 (원/㎡)	소유자
1	월내동	172	임야	2,083	2,083	35,100	여수시
2	월내동	173-1	임야	9,910	9,910	8,540	여수시
3	월내동	173-4	임야	11,511	11,511	31,700	여수시
4	월내동	174-1	임야	14,579	14,579	25,900	여수시
5	월내동	175-1	임야	14,975	14,975	26,400	여수시
6	월내동	175-5	임야	16,337	16,337	26,200	여수시
7	월내동	2-2	전	370	370	40,100	여수시
8	월내동	1413	공장용지	7,615	7,615	59,200	여수시
9	월내동	1418	공장용지	5,098	5,098	59,200	여수시
10	월내동	1419	도로	2,866	2,866	33,700	여수시
11	월내동	1420	공장용지	28,450	28,450	48,900	여수시
합계	-	-	-	113,794	113,794	-	-



(그림 4.1.2-3) 제1후보지 편입부지 지적도

나. 제2후보지

제2후보지는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312 일원이고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직선거리 기준 약 15km 이격되어 있으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급경사 지형이다. 진입도로(시도25호선)가 확·포장될 예정이며, 현재 (췌신O에서 채석장으로 사용중이다.

본 후보지는 지형조건 및 옹벽설치 등 시설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가용가능한 필지면적은 207,351㎡이고, 지목은 임야 54.2%, 대지 45.0%, 전/답 0.0%, 기타 0.8%로 검토되었다. 편입 필지 수는 총 12필지로 사유지 10필지,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필지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4) 제2후보지 현황

조망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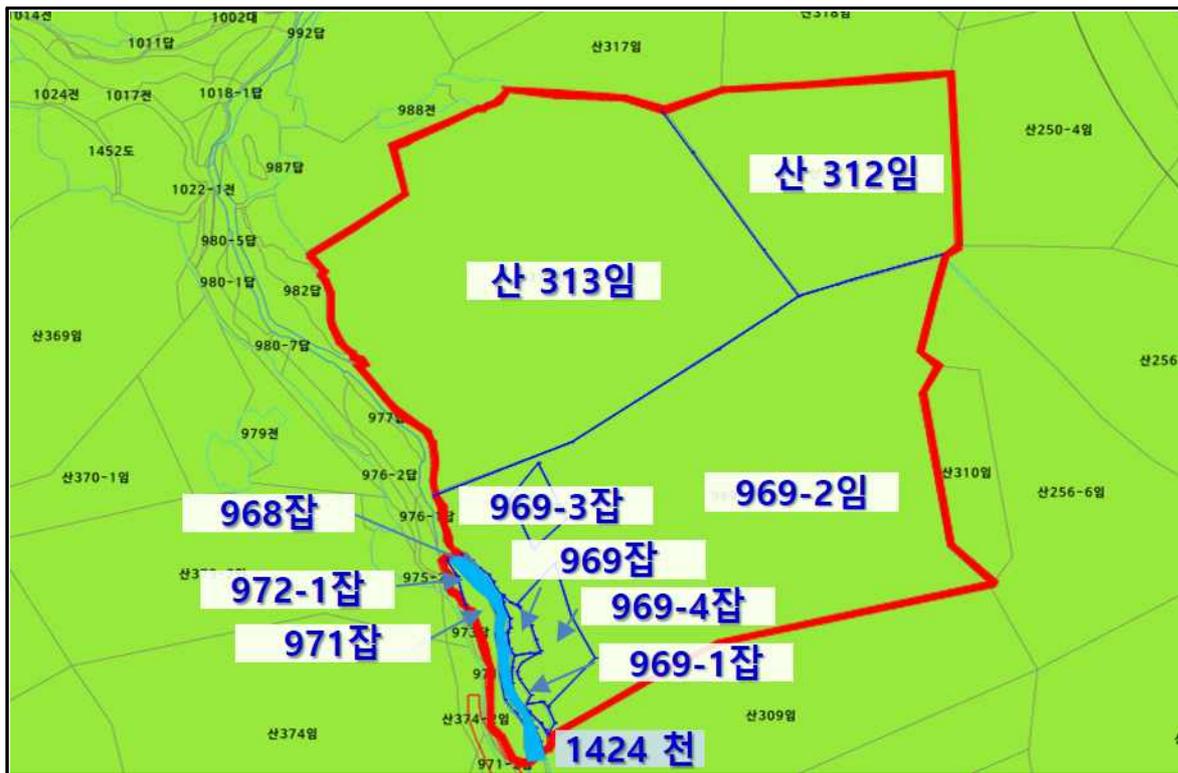
조망점2



(그림 4.1.2-5) 제2후보지 현황

<표 4.1.2-2> 제2후보지 편입용지 현황

NO.	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 (원/㎡)	소유자
1	봉두리	312	임야	30,744	90,744	2,160	(주)신오
2	봉두리	313	임야	81,521	81,521	2,310	(주)신오
3	봉두리	1424	하천	20,193	1,622	-	국토부
4	봉두리	968	잡종지	146	146	15,100	(주)신오
5	봉두리	969	잡종지	784	784	19,200	(주)신오
6	봉두리	969-1	잡종지	668	668	19,200	(주)신오
7	봉두리	969-2	임야	83,027	83,027	2,310	(주)신오
8	봉두리	969-3	잡종지	1,600	1,600	10,100	(주)신오
9	봉두리	969-4	잡종지	4,000	4,000	19,200	(주)신오
10	봉두리	970	답	222	222	13,700	이정심
11	봉두리	971	잡종지	2,681	2,681	19,200	(주)신오
12	봉두리	972-1	잡종지	336	336	15,700	여수시
합계	-	-	-	225,922	207,351	-	-



(그림 4.1.2-6) 제2후보지 편입부지 지적도

4.1.3 지형·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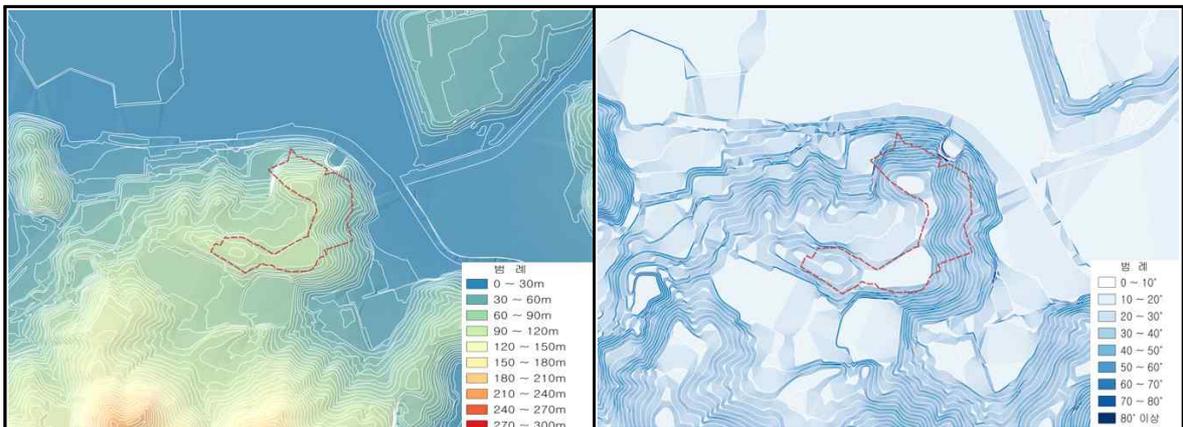
가. 제1후보지

각 후보지의 지형 및 지세를 검토하기 위해 표고 및 경사도 분석을 하였으며, 제1후보지의 최저 표고는 35m이고 최대 표고는 105m로 동측에서 서측으로 표고가 점차 높아지는 지형이다.

경사도는 최대 67°이고 30°미만 경사가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월내매립장 인근 매립장 조성으로 경사가 급한 일부지역 외에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다.

<표 4.1.3-1> 제1후보지 표고 및 경사도 분석

표고	구성면적(㎡)	구성비율(%)	경사	구성면적(㎡)	구성비율(%)
30m 미만	0	0.0	10도 미만	40,563	35.6
51m~60m	16,293	14.3	10도 이상 20도 미만	35,201	30.9
61m~90m	37,442	32.9	20도 이상 30도 미만	34,877	30.6
91m~120m	60,060	52.8	30도 이상 40도 미만	2,164	1.9
121m~150m	-	0.0	40도 이상 50도 미만	478	0.4
150m 이상	-	0.0	50도 이상	501	0.4
합계	113,794	100.0	합계	1137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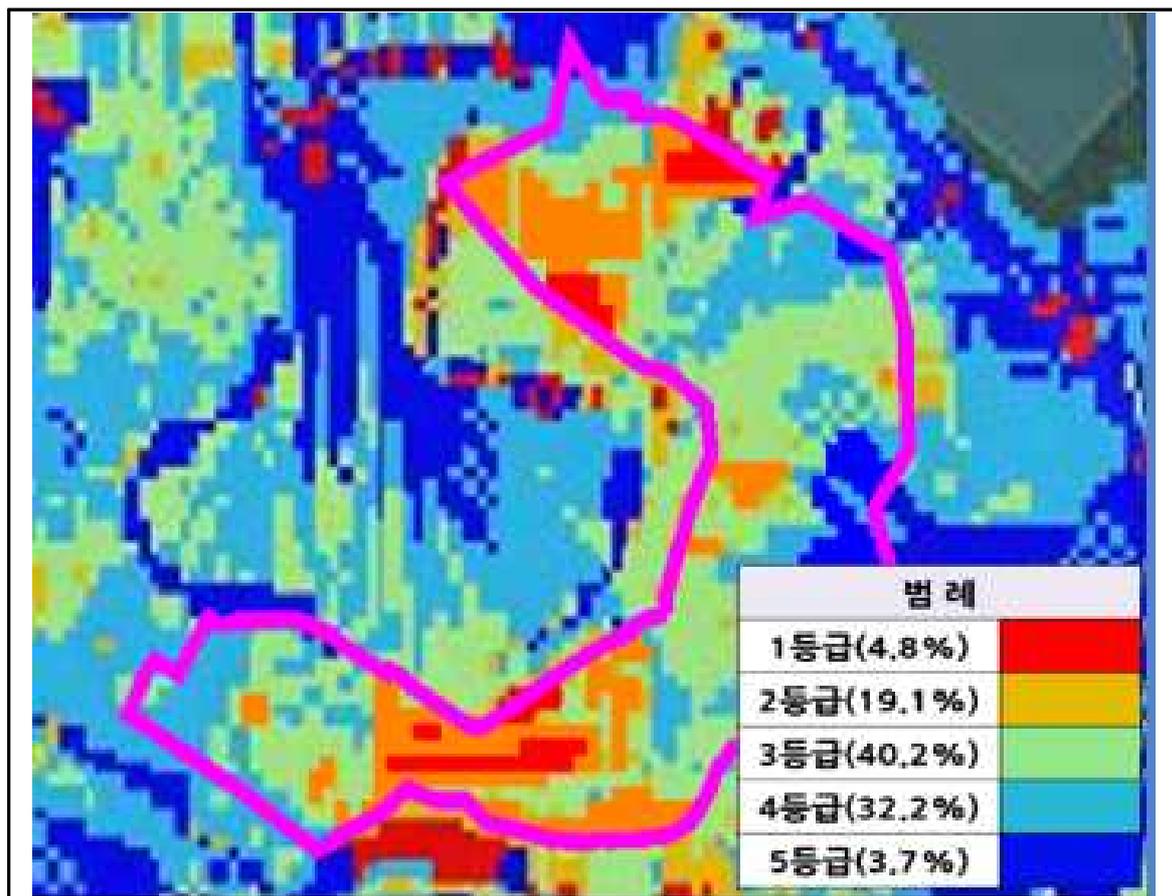
(그림 4.1.3-1) 제1후보지 표고 및 경사분석

산사태는 빗물이 산지사면의 토양내부로 침투하여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투수층(암반)과 흙의 경계가 분리되어 토층(암반상층)의 흙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내적요인(간접요인)으로는 숲(임상, 경급, 임령 등)과 산지(지질, 지형, 토심 등)의 현황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으며, 외적요인(직접요인)으로는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이 산사태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시 내적 및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각 후보지별로 산사태 등급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1~5등급 및 등급 외 지역의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제1후보지내 1~2등급 지역은 전체의 23.9%(27,197㎡)로 검토되었다.

<표 4.1.3-2> 제1후보지 산사태위험도 분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구성면적(㎡)	5,462	21,735	45,745	36,642	4,210	113,794
구성비율(%)	4.8	19.1	40.2	32.2	3.7	100.0



(그림 4.1.3-2) 제1후보지 산사태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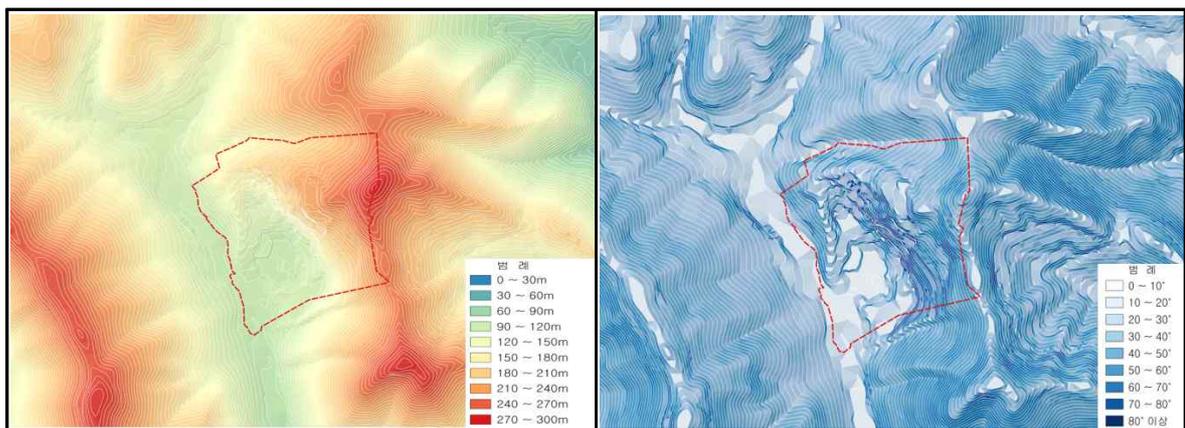
나. 제2후보지

각 후보지의 지형 및 지세를 검토하기 위해 표고 및 경사도 분석을 하였으며, 제2후보지의 최저 표고는 95m이고 최대 표고는 300m로 동측에서 서측으로 표고가 점차 높아지는 급경사 지형이다.

경사도는 최대 82°이고 30°미만 경사가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석장 조성으로 일부지역의 경사가 급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표 4.1.3-3> 제2후보지 표고 및 경사도 분석

표고	구성면적(㎡)	구성비율(%)	경사	구성면적(㎡)	구성비율(%)
91m~120m	65,255	31.5	10도 미만	38,783	18.7
121m~150m	28,098	13.6	10도 이상 20도 미만	41,265	19.9
151m~180m	25,811	12.4	20도 이상 30도 미만	57,455	27.7
181m~210m	27,208	13.1	30도 이상 40도 미만	43,072	20.8
211m~240m	33,539	16.2	40도 이상 50도 미만	14,586	7.0
241m~270m	20,639	10.0	50도 이상 60도 미만	7,345	3.5
270 이상	6,801	3.3	60 초과	4,845	2.4
합계	207,351	100.0	합계	207,3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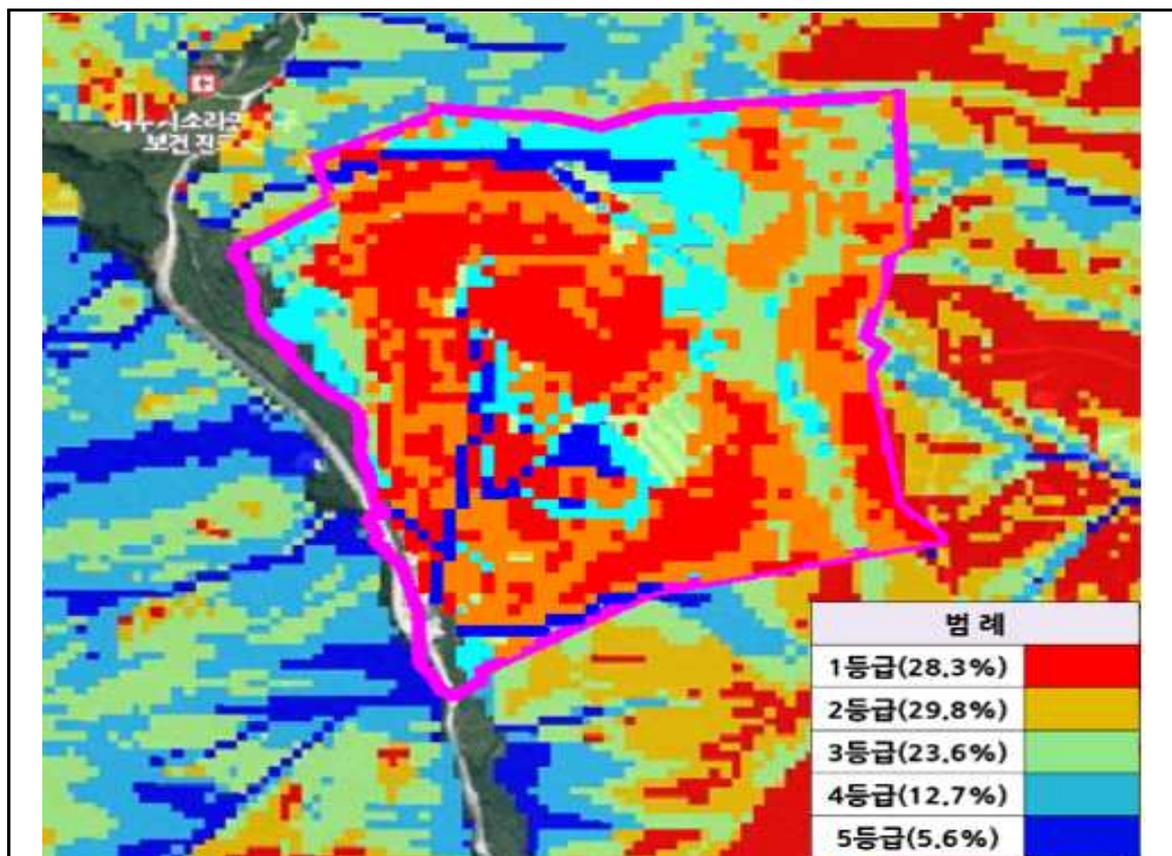
(그림 4.1.3-3) 제2후보지 표고 및 경사분석

산사태는 빗물이 산지사면의 토양내부로 침투하여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투수층(암반)과 흙의 경계가 분리되어 토층(암반상층)의 흙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내적요인(간접요인)으로는 숲(임상, 경급, 임령 등)과 산지(지질, 지형, 토심 등)의 현황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으며, 외적요인(직접요인)으로는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이 산사태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시 내적 및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각 후보지별로 산사태 등급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1~5등급 및 등급 외 지역의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제2후보지내 1~2등급 지역은 전체의 58.1%(120,471㎡)로 검토되었다.

<표 4.1.3-4> 제2후보지 산사태위험도 분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구성면적(㎡)	58,680	61,791	48,935	26,334	11,612	207,351
구성비율(%)	28.3	29.8	23.6	12.7	5.6	100.0



(그림 4.1.3-4) 제2후보지 산사태위험도

4.1.4 토지이용현황

가. 제1후보지

제1후보지는 전체 편입면적(113,794㎡) 중 국·시유지가 10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4-1〉 제1후보지 토지이용 현황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국·시유지		사유지		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임야	69,395	69,395	61.0	-	-	69,395	61.0
공장용지	41,163	41,163	36.2	-	-	41,163	36.2
기타	3,236	3,236	2.8	-	-	3,236	2.8
계	113,794	113,794	100.0	-	-	113,794	100.0

나. 제2후보지

제2후보지는 전체 편입면적(207,351㎡) 중 국·시유지가 0.9%로 1,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99.1%인 205,3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2〉 제2후보지 토지이용 현황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국·시유지		사유지		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임야	195,292	-	0.0	195,292	94.2	195,292	94.2
잡종지	10,215	336	0.1	9,879	4.8	10,215	4.9
기타	1,844	1,622	0.8	222	0.1	1,844	0.9
계	207,351	1,958	0.9	205,393	99.1	207,351	100.0

4.1.5 지장물 현황

후보지내 지장물로는 대표적으로 전신주, 건물, 송전선로 등이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다. 제1후보지(월내동)는 송전선로 1개소, 개수로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후보지(소라면)는 부지내 하천 1개소, 전신주 3개소, 건물 1개소, 주요저장소 및 폐유저장소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단, 향후 기본계획 또는 설계 결과에 따라 부지경계가 바뀔 수 있으며 시설계획에 따라 지장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4.1.6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일반적으로 폐기물 수거·운반비는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후보지별 비교 검토를 통해 여수시내 적정입지를 위한 무게중심점의 파악이 필요하다.

여수시 내 25개의 행정구역(남면, 삼산면은 섬 격주수거지역으로 제외)을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입지후보지별 운반거리를 고려한 부하량을 검토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부하량 산정을 위한 행정구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운반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여수시의 읍면동 인구현황(여수시 통계연보, 2021년 기준)에 발생 원단위 추정치(제3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 추정 원단위 참조)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한편 운반거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후보지까지 운반경로와 운반거리를 구하였으며 도로는 국도 및 지방도 등의 주요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4.1.6-1〉 후보지별 폐기물 수거·운반 부하량

구분	인구(인)	총량제 폐기물 원단위 (kg/인·일)	총량제 폐기물 발생량 (톤/일)	거리(km)		부하량(톤·km/일)		
				후보지1	후보지2	후보지1	후보지2	
돌산읍	13,894	1.003	13.94	46.2	47.2	643.8	657.8	
소라면	21,653		21.72	16.4	8.5	356.2	184.6	
울촌면	6,267		6.29	24.8	15.5	155.9	97.4	
화양면	6,565		6.58	25.8	18.6	169.9	122.5	
화정면	2,176		2.18	37	30.4	80.8	66.3	
동문동	4,637		4.65	23.2	23.9	107.9	111.2	
한려동	3,096		3.11	22.7	23.4	70.5	72.7	
중앙동	4,345		4.36	25.7	24.5	112.0	106.8	
충무동	3,931		3.94	23.9	24.7	94.2	97.4	
광림동	6,078		6.10	24.6	25.4	150.0	154.8	
서강동	3,657		3.67	24.7	25.5	90.6	93.5	
대교동	5,514		5.53	27.4	28.1	151.5	155.4	
국동	11,558		11.59	29.6	28.4	343.1	329.2	
월호동	7,007		7.03	22.9	20.7	160.9	145.5	
여서동	18,442		18.50	22.3	18.9	412.5	349.6	
문수동	21,291		21.35	22.4	19	478.3	405.7	
미평동	11,788		11.82	19.9	16.8	235.3	198.6	
둔덕동	10,292		10.32	16.1	18.1	166.2	186.8	
만덕동	11,022		11.06	24	22.9	265.3	253.2	
쌍봉동	32,149		32.25	15.8	13.6	509.5	438.5	
시전동	38,637		38.75	17.4	15.2	674.3	589.0	
여천동	21,278		21.34	15	12.8	320.1	273.2	
주삼동	8,182		8.21	12.9	11.4	105.9	93.6	
삼일동	2,410		2.42	9.4	21.9	22.7	52.9	
묘도동	1,158		1.16	21.8	5.1	25.3	5.9	
합계	281,977			282.8	-	-	5,902.8	5,242.3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2021년 기준, 읍면동별 세대 및 등록인구)

4.1.7 주거지역과의 관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권(매립시설을 제외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 부지경계로부터 300m)내 주거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본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시 인접거리에 위치한 주거시설에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최단 이격거리 주거현황과 세대수를 조사하였다.

제1후보지는 간접영향권내 주거지역이 없으며, 최단 이격거리 마을은 후보지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당내마을이다.

제2후보지의 간접영향권내 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 마을은 북동쪽으로 약 0.94km 떨어진 봉두리3구 마을이다.

<표 4.1.7-1> 후보지별 주거지역 현황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간접영향권 내 주거현황(300m 이내)	없음	4가구
최단이격거리 주거현황(이격거리)	당내마을 : 1.6km	봉두리3구 : 0.94km
위치		

4.1.8 유틸리티 연계가능성

각 후보지에 대해 전기 및 통신, 상수, 하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후보지 주변 전력선로 및 상·하수관거 현황을 조사하여 공급 계획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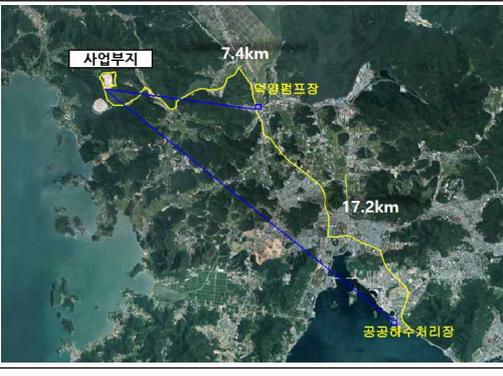
제1후보지의 경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인접해있어 기존에 인입된 상·하수관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전력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용성변전소까지 약 5.4km 이격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내 기존선로를 사업부지에 연결가능하여 공장거리를 0km로 설정하였다.

제2후보지의 경우 채석장으로 사용중인 곳으로 별도의 전용 하수관거가 없어 여수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덕양펌프장까지 별도의 인입공사(약 7.4km)가 필요하다. 전력의 경우 기존 채석장에 배전선로가 연결되어있으나, 향후 시설 설치시 용량부족으로 소라변전소까지 약 6.1km의 신규 배선전로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 4.1.8-1> 후보지별 유틸리티 연계

구분	전력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비고
	변전소 명칭	공장거리 (km)		하수처리시설명	이격거리 (km)	
제1후보지	용성 변전소	0.0	기존 상수관로 연결	산단 내 폐수처리장	0.3	기존관거 활용
제2후보지	소라 변전소	6.1	지하수 연결	여수공공 하수처리장	7.4	덕양펌프장 연결

<표 4.1.8-2> 유틸리티 연계 방안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전력시설 공장거리	 <p>이격거리 : 5.4km 공장거리 : 0.0km(기존 선로 활용)</p>	 <p>공장거리 : 6.1km</p>
하수관	 <p>산단 내 하수관거연결 : 0.3km</p>	 <p>덕양펌프장 : 7.4km</p>

4.1.9 유역면적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면 폐기물처리시설 외곽에 설치되는 우수배제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우수 BOX 등)이 요구되므로 유역면적이 적을수록 양호한 시설입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후보지별로 도상작업을 통해 유역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제2후보지의 면적이 30.1ha로 제1후보지 유역면적(11.4ha)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1> 후보지별 유역면적 현황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집수구역 (유역)면적	113,911㎡ (11.4ha)	300,901㎡ (30.1ha)
위치		

4.1.10 관련법 저촉 및 인·허가

후보지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지별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저촉사항을 검토하였다.

제1후보지의 경우 총 11필지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8필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저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필지 모두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부지가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되므로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의가 필요하다.

제2후보지는 총 12필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2필지는 소로2류에 저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0-1〉 후보지별 용도지역 현황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규제여부
총 용도지역수		11	12	-
국토계획법	폐기물처리(저축)	8	-	입지가능
	일반공업지역	5	-	입지가능
	자연녹지지역	11	12	입지가능
	국가산단	11	-	협의(변경)필요
타 법령	보전관리지역	11	-	협의(변경)필요

4.1.11 시설배치계획

배치계획 규모는 본 사업의 계획 규모에 따라 고려하였으며, 후보지별 동일 조건에서 배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소각시설(35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30톤/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150톤/일) 설치에 필요한 60,000㎡ 이상을 최소 소요면적으로 계획하였다.

상세 시설계획은 향후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조건에서는 입지후보지의 최대가용면적을 고려하였다.

가. 제1후보지

제1후보지는 월내동 산 172임 일원으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금회 시설 사업면적은 113,794㎡로 계획하였다. 토공물량은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략 토공물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설계시 시설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토공물량 : 절토량 = 94,600㎡, 성토량 = 3,100㎡



(그림 4.1.11-1) 시설배치계획(제1후보지)

나. 제2후보지

제2후보지는 소라면 봉두리 산312 일원으로 채석장으로 운영중인 인공협곡 부지이며, 금회 시설 사업면적은 207,351㎡로 계획하였다. 토공물량은 현재 채석장 개발 이후 산지 복구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략 토공물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설계시 시설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토공물량 : 절토량 = 0.0㎡, 성토량 = 9,600㎡



(그림 4.1.11-2) 시설배치계획(제2후보지)

4.1.12 진입도로 개설 검토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서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도로선형은 부지매입, 주거지역 통과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본 과업에서는 각 후보지에 가장 인접한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에 완공계획이 있는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지까지의 최단거리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후보지는 여수산단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제2후보지는 의곡길에서 사업부지까지 시도25호선이 확·포장 될 예정이다.

<표 4.1.12-1> 진입도로 연장 검토

구분	진입도로 연장(km)	검토
제1후보지	0.7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여수산단로)에서 분기하여 0.7km 포장
제2후보지	0	시도25호선 확·포장 예정



(그림 4.1.12-1) 진입도로 검토

4.1.13 토지 취득비용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취득은 해당 토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지보상비는 검토는 앞서 '4.1.2 후보지 입지여건 분석'에서 검토한 편입용지 중 사유지 편입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지보상비를 산정하였다.

〈표 4.1.13-1〉 후보지별 부지보상비

구분	부지보상비(예상) ¹⁾	비고
제1후보지	0.0억원	시유지 100%
제2후보지	6.2억원	전체 면적 : 207,351㎡ 사유지 면적 : 205,393㎡ (사유지 비율 : 99.1%)

4.1.14 개략공사비

개략공사비는 입지여건에 따른 토공발생량, 하수관거 연장유무, 진입도로 개설유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부지조성비, 상·하수관로 조성비, 진입도로 조성비를 고려하여 개략공사비를 추정하였다. 본 공사에서는 토공량에 따른 부지조성비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6호)에 따라 관로 및 도로설치 비용을 계산하였다. 주요 수량은 도상자료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개략공사비는 향후 설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 4.1.14-1> 후보지별 개략공사비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비고
부지조성비(A)	약 208.6억원	약 163.6억원	토공 및 구조물공에 따른 조성비
상수관로 조성비(B)	0.0억원	0.0억원	-
하수관로 조성비(C)	0.0억원	9.6억원	관경 300mm, 7.4km 조성
진입도로(D)	0.0억원	0.0억원	-
소계(E)	208.6억원	173.2억원	A+B+C+D
제경비(F)	83.6억원	69.3억원	E X 40%
총계(G)	292.3억원	242.5억원	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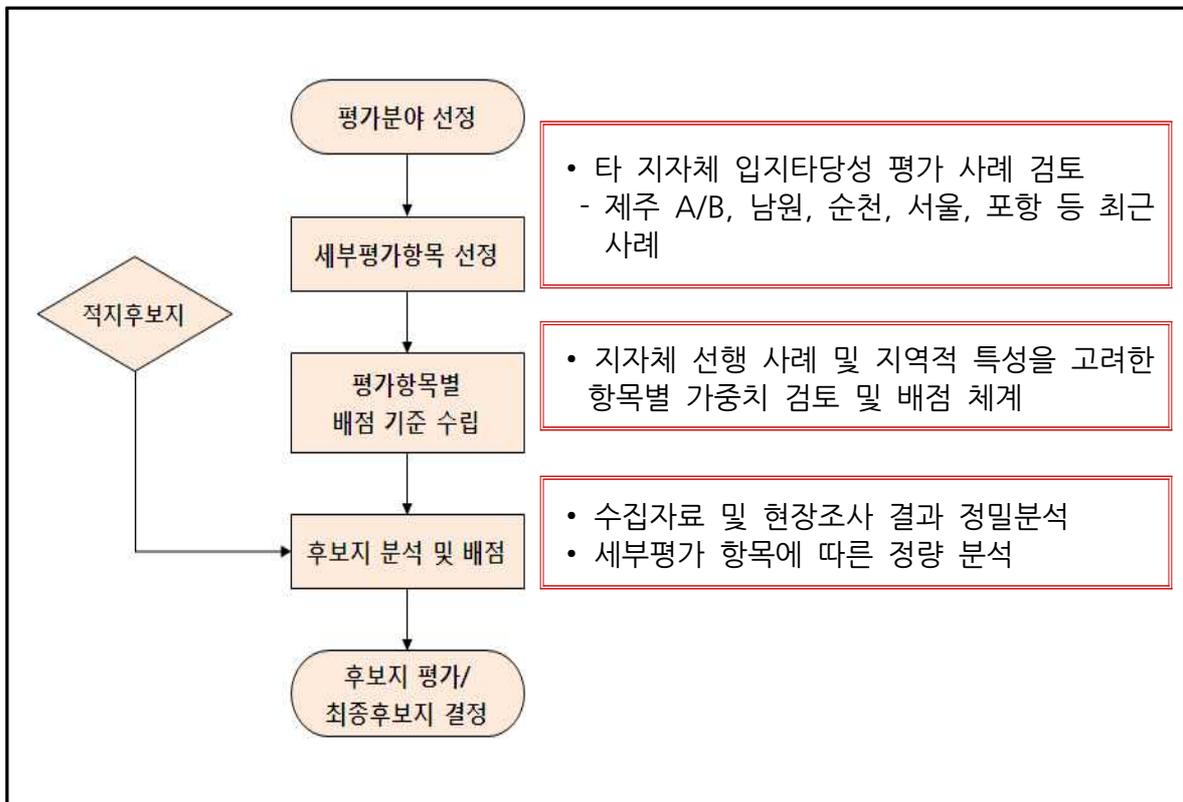
4.2 후보지 평가방법

4.2.1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생활의 편의와 위생적인 환경을 영위하기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최적입지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국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법제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분야별로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입지선정 방법이 국내 타 지자체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적용 되었다.

본 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2004.12, 환경부) 및 타 지자체의 선행 사례 검토와 여수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림 4.2.1-1) 입지후보지 평가 및 배점 절차

가. 후보지 평가항목

1) 평가분야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2004.12)」에서는 후보지 선정 시 시공성, 방재·환경성을 고려한 기술성, 토지이용성, 경제성, 토지소유 형태 및 주민동의 등의 용지취득 가능성, 시설 운영성, 유지관리성 등의 총 6개 분야 20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표 4.2.1-1> 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기술적 측면	공사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 및 지질 등이 적합한 곳 •시공조건이 유리한 곳 •공사재료의 확보가 용이한 곳
	방재측면, 환경보전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의 변화에 따른 흙의 미끄러짐 등 붕괴우려가 없는 곳 •지형의 변화로 인한 하천유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곳 •하천, 호소, 해역 등 주변 수역의 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는 곳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도시계획결정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곳 •자연환경(경관, 생태계)상 입지가 가능한 곳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시설 건설비 및 부대공사비 등의 소요가 경제적인 곳
용지 취득의 가능성	소유형태 및 주민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형태상 용지취득이 가능한 곳 •주민동의가 용이한 곳
작업성 및 유지관리	시설운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운영이 용이한 곳 •2차 공해발생요인이 적은 곳 •폐기물의 이송거리가 짧은 곳
	유지관리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 전력 등의 설치가 용이한 곳 •시설관리가 용이한 위치 및 지형인 곳 •환경감시(모니터링)에 적합한 곳 •폐기물의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진입로의 개설이 용이한 곳 •토취장 확보가 용이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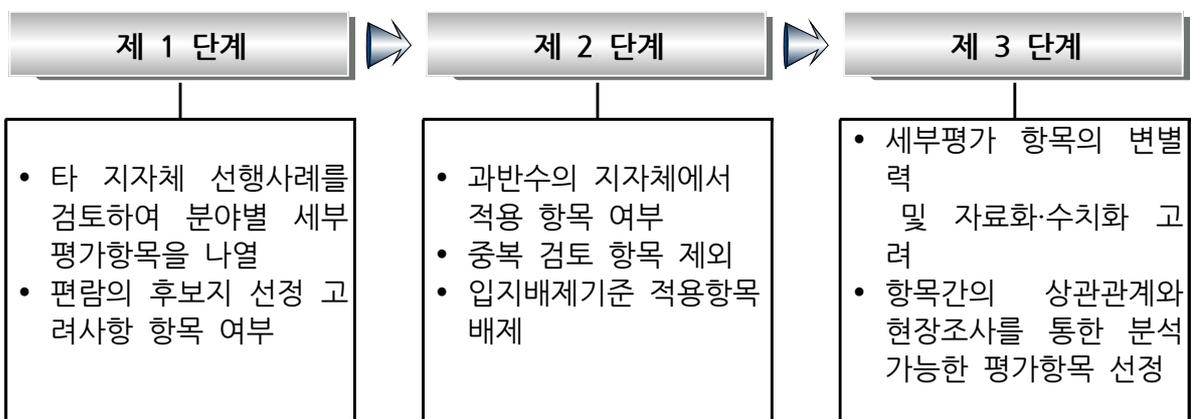
또한, 타 지자체에서 선행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입지)적 조건, 환경적조건, 사회적조건, 기술적조건, 경제적 조건 등 총 4~5개 분야로 후보지별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편람 내용과 타 지자체 선행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표와 같이 기본평가분야를 및 주요 평가 항목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4.2.1-2> 평가분야

평가분야	주요내용
일반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시설의 확장이 용이하고 기존 관련시설과의 연계처리가 용이한가? •주요 간선도로망으로부터 접근성이 입지적으로 양호 한가?
사회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의 법적인 제약조건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후보지내외의 주거지역 여부 및 세대 수가 적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양호 한가?
환경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 생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환경친화적인 시설입지가 가능한가?
기술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조성과 시공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시설입지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및 배수시설 등의 규모는 어느 후보지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소각시설 발생 여열 사용 조건은 양호 한가?
경제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시설 공사비 및 부대공사 등의 소요가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사유지 및 건축물, 과수원 등 토지보상비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2)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검토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은 다음 그림과 같이 타 지자체의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적용 빈도, 항목의 중복 여부, 객관적 평가 가능 여부, 본 사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의 ‘후보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사례 별 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1-2)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검토 절차

가) 일반적 조건

입지에 관한 사항의 일반적 조건은 장래 시설확장을 고려한 부지면적, 주변 도로망에 따른 시설의 접근 용이성, 토지이용현황, 전기·통신·상수도·하수도 등의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9개 항목 가운데 입지가 가능 후보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적 조건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부산물 수요처와의 거리는 에너지 활용도 측면에서 기술적 조건에서 검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성은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에서 선 반영 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회 입지타당성조사의 대상지자체인 여수시에는 공항이 설치되어 있어 ‘공항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후보지 2곳 모두 공항과의 이격거리가 있어 ‘공항과의 관계’ 항목은 제외하였다.

<표 4.2.1-3> 일반적 조건

세부항목	금회 적용	타 지자체 사례						비 고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여유부지확보 (시설연계성)	◎	○	○	○	○	○	○	소요면적(60,000㎡ 이상), 확장가능성
②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	○	○			○	○	주요도로(간선도로)에서 시설 접근성
③ 토지활용도	◎	○		○	○	○	○	용도·지역·지구에따른 설치의 용이성
④ 지장물 현황	◎	○	○	○	○	○	○	지장물현황 및 이전 가능성
⑤ 재해에 대한 안정성	◎	○	○	○	○	○	○	강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등
⑥ 공항과의 관계						○		고도제한, 방공식별 구역 여부 등
⑦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	○	○	○	○	○	○	전기, 상하수도 등과의 연계 가능성
⑧ 부산물 수요처와의 거리		○						침출수연계처리 가능성
⑨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성						○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지역에 점수 부여

주 : 1. 제주 A : 소각 500톤/일, 매립 3만㎡, 2019
 2. 제주 B : 소각 300톤/일, 진행중
 3. 남원 : 소각 100톤/일, 진행중
 4. 순천 : 소각 200톤/일, 매립 5만㎡, 재활용 60톤/일, 진행중
 5. 서울 : 소각 1,000톤/일, 진행중
 6. 포항 : 음식물 200톤/일, 진행중

나) 사회적 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변 지역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학적 측면의 조건을 검토하여 객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 수거·운반의 효율성 정도를 통한 2차 환경오염(사회비용) 최소화, 직·간접적인 영향권 범위에 포함되는 주거지역과의 거리 및 세대수,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법규 인허가 절차의 용이성, 사업부지 편입필지의 사유지 비율에 따른 부지매입 용이성, 지역주민의 기피 또는 공모 등 시정현황에 따른 주민동의 등을 검토하였다. 10개 항목 중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조건 5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4.2.1-4> 사회적 조건

세부항목	금회 적용	타 지자체 사례						비 고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	○	○	○	○		○	폐기물운반거리, 수거운반 부하량등
② 쓰레기 수송에 따른 교통영향						○		폐기물차량 운반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③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	○	○	○	○	○	○	직·간접영향권내 주거현황
④ 주변 문화재 및 공공시설						○		후보지 주변 문화재 및 공공시설 위치
⑤ 관련법 인허가	◎	○	○	○	○	○	○	관련법규 저촉사항, 인허가 사항
⑥ 부지매입 용이성		○					○	전체 편입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
⑦ 타 지자체 이격					○	○		타 지자체와의 이격거리
⑧ 주민동의도(민원)	◎	○	○	○	○		○	주민참여도(동의비율), 주민협의체 등
⑨ 인근 휴양시설 (관광지) 영향						○		아동, 노인 복지시설 등 설치 여부
⑩ 주민편익시설 활용도			○					후보지 주변마을의 주민 협력도

- 주 : 1. 제주 A : 소각 500톤/일, 매립 3만㎡, 2019
 2. 제주 B : 소각 300톤/일, 진행중
 3. 남원 : 소각 100톤/일, 진행중
 4. 순천 : 소각 200톤/일, 매립 5만㎡, 재활용 60톤/일, 진행중
 5. 서울 : 소각 1,000톤/일, 진행중
 6. 포항 : 음식물 200톤/일, 진행중

다) 환경적 조건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상되는 환경적 조건으로 시설입지에 따른 주변 경관, 주변 동식물 현황 등 생태계 영향, 소각시설 굴뚝의 배기가스 확산 정도를 고려한 대기 질, 재해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한 수계현황, 주변 정온시설 여부에 따른 소음진동, 악취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표 4.2.1-5> 환경적 조건

세부항목	금회 적용	타 지자체 사례						비 고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경관	◎	○	○	○	○	○	○	자연경관 및 시설입지 후 경관변화
② 주변 생태계	◎	○	○	○	○	○	○	생태자연도 현황(등급별)
③ 대기질영향	◎	○	○	○	○	○	○	대기확산용이성, 주변오염농도 등
④ 수계 영향	◎	○	○		○	○	○	주변 수계 영향, 하수처리장 연계 등
⑤ 소음·진동, 악취 영향	◎	○	○	○	○	○	○	시설공사 및 운영시소음·진동·악취

- 주 : 1. 제주 A : 소각 500톤/일, 매립 3만㎡, 2019
 2. 제주 B : 소각 300톤/일, 진행중
 3. 남원 : 소각 100톤/일, 진행중
 4. 순천 : 소각 200톤/일, 매립 5만㎡, 재활용 60톤/일, 진행중
 5. 서울 : 소각 1,000톤/일, 진행중
 6. 포항 : 음식물 200톤/일, 진행중

라) 기술적 조건

각 후보지에 대하여 개략적인 시설배치를 통해 기술적 조건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공사 시 입지유형별 표고 및 경사도에 따른 부지조성 용이성, 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진출입도로 개설 용이성과 운영 시 소각여열 이용 가능성 등의 항목을 검토하였다.

공해방지대책은 환경적 조건 내용과 중복되며, 설계시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금회 평가항목에서는 배제하였다.

<표 4.2.1-6> 기술적 조건

세부항목	금회 적용	타 지자체 사례						비 고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	○	○	○	○	○	○	토공(절·성토량), 표고·경사도분석
② 진출입도로 개설	◎	○		○	○	○	○	진출입도로 설치 필요 연장 등
③ 기초지반상태	◎					○	○	지반개량 또는 보강필요 여부
④ 집수구역면적	◎	○		○	○		○	우수배수시설용량산정 기준
⑤ 에너지회수 효율	◎	○		○	○	○	○	소각여열 및 바이오가스 수요처확보

주 : 1. 제주 A : 소각 500톤/일, 매립 3만㎡, 2019
 2. 제주 B : 소각 300톤/일, 진행중
 3. 남원 : 소각 100톤/일, 진행중
 4. 순천 : 소각 200톤/일, 매립 5만㎡, 재활용 60톤/일, 진행중
 5. 서울 : 소각 1,000톤/일, 진행중
 6. 포항 : 음식물 200톤/일, 진행중

마)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은 처리시설의 개략공사비 및 시설입지에 따른 부대공사비, 사유지 및 건축물, 기타 부속물(수목 등)의 보상비 등을 고려한 토지취득비용 등을 검토하였다. 운영관리비 항목은 폐기물 수집, 운반 효율성 항목과 중복되며, 주변지역에 대한 편익 항목은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고 변별력이 낮아 제외하였다.

<표 4.2.1-7> 경제적 조건

세부항목	금회 적용	타 지자체 사례						비 고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개략공사비	◎	○		○	○	○	○	개략공사비 검토
②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비용	◎	○		○	○	○	○	토지매입비용
③ 주민 편익시설 활용도						○		주민편익시설 설치시주민이용효과
④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운영						○		여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⑤ 소각시설 도내 균형적 분포도			○					소각시설 설치시지역의 분산 배치

주 : 1. 제주 A : 소각 500톤/일, 매립 3만㎡, 2019
 2. 제주 B : 소각 300톤/일, 진행중
 3. 남원 : 소각 100톤/일, 진행중
 4. 순천 : 소각 200톤/일, 매립 5만㎡, 재활용 60톤/일, 진행중
 5. 서울 : 소각 1,000톤/일, 진행중
 6. 포항 : 음식물 200톤/일, 진행중

나.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 항목별 배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징, 지리적 특징 등 입지 후보지간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항목의 타 지자체 배점 사례 검토와 금회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 기준을 검토하였다.

1) 타 지자체 배점 사례

가) 일반적 조건

일반적 조건에서는 대부분 부지면적, 접근 용이성, 토지활용도 등의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 하였다.

<표 4.2.1-8> 일반적 조건 배점 사례

세부항목	평균	타 지자체 사례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여유부지 확보(시설연계성)	4.0	5.0	4.0	4.0	6.0	2.0	3.0
②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4.0	4.0	4.0			3.0	5.0
③ 토지활용도	3.6	3.0		4.0	4.0	4.0	3.0
④ 지장물현황	3.3	3.0	5.0	4.0	3.0	3.0	2.0
⑤ 재해에 대한 안정성	3.8	4.0	4.0	4.0	4.0	3.0	4.0
⑥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3.5	3.0	4.0	4.0	3.0	2.0	5.0

나) 사회적 조건

입지후보지 주변 주거지역 여부, 폐기물 운반동선의 최소화,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한 사회적 조건에서는 지자체 사례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주민동의도, 주거지역 현황에서 가중치를 두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동의도의 배점이 높았던 지자체는 후보지역 선정 방식을 주민공모제를 통해 하였으며 주민 동의서의 접수 정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 4.2.1-9> 사회적 조건 배점 사례

세부항목	평균	타 지자체 사례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폐기물 수립운반 효율성	5.0	5.0	4.0	5.0	6.0	-	5.0
②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9.5	7.0	10.0	7.0	6.0	21.0	6.0
③ 법적 저촉여부 및 관련법 인허가	4.8	4.0	4.0	7.0	5.0	5.0	4.0
④ 주민동의도(민원)	9.6	7.0	15.0	10.0	7.0	-	9.0

다)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서는 처리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상되는 대기질 영향 정도에 높은 배점을 반영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포항시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성에 대해 높은 배점을 고려한 사례가 있다.

<표 4.2.1-10> 환경적 조건 배점 사례

세부항목	평균	타 지자체 사례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경관	4.7	5.0	5.0	5.0	5.0	4.0	4.0
② 주변 생태계	4.5	4.0	5.0	5.0	5.0	4.0	4.0
③ 대기질영향	5.3	3.0	5.0	6.0	5.0	8.0	5.0
④ 수계 영향	4.6	7.0	4.0	-	5.0	2.0	5.0
⑤ 소음진동, 악취 영향	4.7	4.0	4.0	4.0	5.0	7.0	4.0

라) 기술적 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 시 및 운영에 따른 기술적 조건은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에 높은 배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각 여열회수를 고려한 소각여열 이용 효율성은 시설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다.

본 과업에서는 신규 설치 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는 진출입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높은 배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2.1-11> 기술적 조건 배점 사례

세부항목	평균	타 지자체 사례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4.3	5.0	3.0	6.0	4.0	4.0	4.0
② 진출입도로 개설	4.5	5.0	-	6.0	4.5	2.0	5.0
③ 기초지반상태	3.0	-	-	-	-	2.0	4.0
④ 집수구역면적	3.4	3.0	-	4.0	3.5	-	3.0
⑤ 에너지회수 효율성	4.0	5.0	-	5.0	4.0	2.0	4.0

마)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배치 검토에 따른 개략공사비와 사업부지 및 진출입도로 등의 편입필지에 대한 토지취득비용에 균등한 배점 분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4.2.1-12> 경제적 조건 배점 사례

세부항목	평균	타 지자체 사례					
		제주A	제주B	남원	순천	서울	포항
① 개략 공사비	4.8	5.0	-	6.0	5.0	2.0	6.0
②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비용	3.2	3.0	-	4.0	4.0	3.0	2.0

2) 평가 배점 기준

본 계획에서는 항목별로 타 사례의 평균배점을 감안하되 사업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고, 평균 배점이 높으나 항목간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배점을 낮추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에서 의결한 배점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 항목은 ‘주민동의도(항목)’로서 최고점 (12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항목, 개략 공사비에서 각각 9점, 5점으로 높은 배점을 반영하였다.

<표 4.2.1-13> 입지후보지 선정 평가 배점 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 점(위원회 의결)		
		사례 평균	검토(안)	적용
일반적 조건	① 여유부지 확보(시설연계성)	4.0	4.0	4.0
	②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4.0	4.0	4.0
	③ 토지활용도	3.6	4.0	4.0
	④ 지장물현황	3.3	3.0	3.0
	⑤ 재해에 대한 안정성	3.8	4.0	4.0
	⑥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3.5	3.0	3.0
	소 계	22.2	22.0	22.0
사회적 조건	① 폐기물 수집, 운반 효율성	5.0	5.0	5.0
	②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9.5	9.0	9.0
	③ 법적 저촉여부 및 관련법 인허가	4.8	5.0	5.0
	④ 주민동의도 (민원)	9.6	10.0	12.0(+2)
	소 계	28.9	29.0	31.0(+2)

〈표 4.2.1-13 계속〉 입지후보지 선정 평가 배점 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 점(위원회 의결)		
		사례 평균	검토(안)	적용
환경적 조 건	① 경관	4.7	5.0	5.0
	② 주변 생태계	4.5	4.0	4.0
	③ 대기질영향	5.3	5.0	4.0(-1)
	④ 수계 영향	4.6	4.0	4.0
	⑤ 소음진동, 악취 영향	4.7	5.0	4.0(-1)
	소 계	23.8	23.0	21.0(-2)
기술적 조 건	①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4.3	4.0	4.0
	② 진출입도로 개설	4.5	4.0	4.0
	③ 기초지반상태	3.0	3.0	3.0
	④ 집수구역면적	3.4	3.0	3.0
	⑤ 에너지회수 효율성	4.0	4.0	4.0
	소 계	19.2	18.0	18.0
경제적 조 건	① 개략 공사비	4.8	5.0	5.0
	②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비용	3.2	3.0	3.0
	소 계	8.0	8.0	8.0
합계(평균)		-	100.0	100.0

4.2.2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의 선정

후보지의 최종평가를 위해 앞서 선정된 세부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별 속성을 검토하여 이를 평가 값으로 환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방법으로는 정성적 평가법, 정량적 평가법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는 후보지간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정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 평가등급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정량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속성에 따라 최고점과 최하점의 후보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폐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후보지별 평가 속성(지표)값에 따라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여건으로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큰 평가 점수 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각 평가방법별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적절한 평가법을 선택 또는 혼합하여 적용하였다.

<표 4.2.2-1> 평가방법의 비교

구 분	정성적 평가법	정량적 평가법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다수의 후보지가 동일등급 (점수)를 부여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인 평가값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경우, 평가값의 우열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배점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기준 하에서 적합 여부를 판별할 경우 유용 • 객관성과 정량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간 미세 차이에 대한 판단 한계 - 평가자에 따라 평가내용이상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간 상대적 차이의 체계적 고려 가능 • 객관성 확보로 자의적 평가 배제가 가능 • 후보지간 평가값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큰 점수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준치(임계값)를 가지는 항목에 적용 • 정량적인 평가값을 갖지 않는 항목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부지, 수계영향, 소음·진동, 기초지반상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인 평가값 도출 가능 항목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토지활용, 지장물현황 등
점수 부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별 배점의 일정비율 (50%)을 기본값으로 설정 • 특정 기준에 따라 후보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만족시 만점, 부적합시 기본값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별 정량적 평가값에 대해 1~5순위 부여 • 총 배점의 100%, 80%, 60%, 40%, 20% 순 점수 부여

4.2.3 후보지별 평가

가. 일반적 조건

1) 부지면적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4.0	4.0
조사내용	113,794㎡	207,351㎡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추가면적 확보(기준 : 60,000㎡) -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4.0점, 기준면적 미만 2.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2)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가) 주변도로와 접근성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0.4	2.0
조사내용	0.7km(여수산단로)	0km(시도25호선)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지에서 간선도로까지 거리(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 국도, 지방도, 국지도, 4차선이상 도시계획도로 - 간선도로에서 시설부지까지 접근연장이 짧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거리 0km와 산정한 평균값(0.2km)를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1.6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 0km이하 2.0점, 0.2km이하 1.6점, 0.4km이하 1.2점, 0.6km이하 0.8점, 0.6km초과 0.4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간선도로 제원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2.0	1.6
조사내용	왕복 4차로 / 아스콘포장	왕복 2차로 / 아스콘포장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제원(차로수, 포장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포장 및 차로수가많을수록 높은 배점 - 4차로 이상(아스콘) 2.0점, 2차로 이상(아스콘) 1.6점, 1차로(아스콘) 1.2점, 비포장 도로 0.8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3) 토지활용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3.2	2.4
조사내용	대지 : 36.2%, 전/답 : 0.3% 임야 : 61.0%,기타: 2.5% 점수 : 4.4	대지 : 45.0%, 전/답 : 0.0% 임야 : 54.2%,기타: 0.8% 점수 : 3.2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현황(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성(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 지목별가중치[유휴지·대지·잡종지·공장용지(7), 전·답(5), 임야 및 유수지(3), 구거, 제방, 도로,기타(1)] 에 대하여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점수 7점과 산정한 평균값(4.9=약 5.0)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3.2점)로 선정 - 점수계산 = $\sum\{가중치 \times (편입용도별\ 면적 / 총\ 사업면적)\}$ - 점수 : 5.0초과 4.0점, 5.0이하 3.2점, 4.0이하 2.4점, 3.0이하 1.6점, 2.0이하 0.8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4) 지장물 현황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2.4	0.6
조사내용	송전탑 1개소, 개수로 1개소 점수 : 6.0	하천 1개소, 전신주 3개소, 변압기 1개소, 건물 1개소 주유저장소 1개소, 폐유저장소 1개소, 점수 : 15.0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현황 및 이전·보상 가능성 평가 - 후보지 내 지장물종류별 가중치[도로·제방(5), 가옥·건물(4), 과수(3), 개수로(2), 분묘·전신주·기타(1)]를 적용하여 종합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점수 0점으로 산정한 평균값 7.0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2.4점)로 선정 - 점수계산 = $\sum(지장물수량 \times 가중치)$ - 점수: 5.6이하 3.0점, 7.0이하 2.4점, 8.4이하 1.8점, 9.8이하 1.2점, 9.8초과 0.6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5) 재해에 대한 안정성

가) 침수에 대한 영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2.0	2.0
조사내용	침수심: 0.5m 이하	침수심: 0.5m 이하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침수심범례에 따라 배점간격 설정 - 사업부지 지형의 침수심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 - 침수심: 0.5m이하 2.0점, 1.0m이하 1.6점, 2.0m이하 1.2점, 3.0m이하 0.8점, 3.0m초과 0.4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산사태에 대한 영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1.2	0.4
조사내용	1등급 : 4.8%, 2등급 : 19.1%, 3등급 : 40.2%, 4등급 : 32.2%, 5등급 : 3.7% 점수 : 2.9	1등급 : 28.3%, 2등급 : 29.8%, 3등급 : 23.6%, 4등급 : 12.7%, 5등급 : 5.6% 점수 : 3.6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내 산사태 위험지역 - 산사태위험지역등급별 가중치[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점수 1.0으로 산정한 평균값 2.5점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1.6점)로 선정 - 점수계산 = $\sum(\text{등급별 면적비율} \times \text{가중치})$ - 점수 : 2.0이하 2.0점, 2.5이하 1.6점, 3.0이하 1.2점, 3.5이하 0.8점, 4.0이하 0.4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6)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가) 전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0.2
조사내용	-km (용성변전소, 기존 산단 내 설치된 전력선 활용)	6.1km (소라변전소)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배전선로 사용여부 - 인접한 곳에 변전소(적정전압의 전류를 연결할 수 있는 곳)까지 이격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거리 0km로 산정한 평균값 2.0km를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0.8점)로 선정 - 1.6km이하 1.0점, 2.0km이하 0.8점, 2.4km이하 0.6점, 2.8km이하 0.4점, 2.8km초과 0.2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상수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0.5
조사내용	상수관로 연결	지하수 사용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관로유무 - 상수사용가능성에 대한 배점 - 상수관로연결 1점, 지하수 사용 0.5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다) 하수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0.2
조사내용	기존 관거활용 0.3km	덕양펌프장 7.4km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관로유무 - 하수처리시설과 연결가능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거리 0km로 산정한 평균값 2.6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0.8점)로 선정 - 2.1km이하 1.0점, 2.6km이하 0.8점, 3.1km이하 0.6점, 3.6km이하 0.4점, 3.6km초과 0.2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사회적 조건

1)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부하량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1.8	2.4
조사내용	5,902.8톤·km/일	5,242.3톤·km/일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부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운반 부하량(톤·km/일)이 적을수록 높은 배점 - 수거·운반 부하량 평균값(5,573=약 5,500)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2.4점)로 선정 - 점수계산 : Σ행정구역별 발생량(톤/일)×운반거리(km) - 수거·운반 부하량 4,400이하 3.0점, 5,500이하 2.4점, 6,600이하 1.8점, 7,700이하 1.2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최종처분 운반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2.0	0.4
조사내용	0.18km	19.7km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잔재물(바닥재 등)은 매립·월내매립장까지의 거리 짧을수록 높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거리 0km로 산정한 평균거리 6.6km를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1.6점)로 선정 - 5.3km이하 2.0점, 6.6km이하 1.6점, 7.9km이하 1.2점, 9.2km이하 0.8점, 9.2km초과 0.4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2)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가) 최단이격거리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4.0	2.4
조사내용	당내마을: 약 1.6km	봉두3리 : 약 0.94km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경계로부터 주거지역 이격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이격거리가 멀수록 높은 배점(주거지역 :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20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 또는 자연부락) - 기준거리 0km로 산정한 평균거리 0.8km를 전체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점수(1.6점)로 선정 - 1.2km초과 4.0점, 1.2km이하 3.2점, 1.0km이하 2.4점, 0.8km이하 1.6점, 0.6km이하 0.8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간접영향권내 세대수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5.0	
점 수	5.0	3.0
조사내용	없음	4세대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영향권(300m)내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영향권 내 세대수가 적을수록 유리 - 평균값(1.3세대=약 2세대)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4.0점)로 선정 - 세대수無 5.0점, 2세대 이하 4.0점, 4세대 이하 3.0점, 6세대 이하 2.0점, 6세대 초과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3) 관련법 인·허가 용이성

가) 용도지역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0.4	2.0
조사내용	11필지(자연녹지지역)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불리 여건(보전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보전관리지역의 편입 필지가 많을수록 낮은 배점 - 평균값(3.7필지=약 4필지)를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1.6점)로 산정 - 보전관리지역 3필지 이하 2.0점, 4필지 이하 1.6점, 5필지 이하 1.2점, 6필지 이하 0.8점, 6필지 초과 0.4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2.0	3.0
조사내용	전용 가능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구의 변경, 해제, 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낮은 배점 - 관련 지역/지구 변경/해제 필요시 1.0점, 전용 가능시 2.0점, 미포함시 3.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4) 주민동의도

가) 유치희망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2.0	2.0
조사내용	입지후보지 신청	입지후보지 신청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후보지 유치희망 신청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희망 신청지역 2.0점, 미신청지역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주민의견서 참여율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5.0	
점 수	3.0	2.0
조사내용	67% (전체 849세대, 의견서 참여 569세대)	59% (전체 73세대, 의견서 참여 43세대)
평가방식 (정량적)	• 주민의견서참여율 - 기준 100%로 산정한 참여율 75%를전체 배점의 80%(4.0점)에 해당 하는 점수로 선정 - 참여율(%) : 90%이상 5.0점, 75%이상 4.0점, 60%이상 3.0점, 45%이상 2.0점, 45%미만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다) 주민의견서 동의율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5.0	
점 수	4.0	5.0
조사내용	91% (의견서 참여 569세대, 동의 519세대)	98% (의견서 참여 43세대, 동의 42세대)
평가방식 (정량적)	• 주민의견서내 동의율 - 평균 95%를 전체 배점의 100%에 해당하는 점수(5.0점)로 선정 - 동의율(%) : 95%이상 5.0점, 76%이상 4.0점, 57%이상 3.0점, 38%이상 2.0점, 38%미만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다. 환경적 조건

1) 경관성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5.0	
점 수	4.0	4.0
조사내용	혼재(자연녹지, 여수국가산업단지)	혼재(농촌경관, 채석장)
평가방식 (정성적)	• 주변경관현황 - 기존 자연경관의 예상 훼손도가 낮은 지역 일수록 높은 배점 - 기존경관 훼손 또는 개발정도에 따라 배점 (인공>자연·농촌 혼재>자연) - 우세 경관이 인공 5.0점, 혼재 4.0점, 농촌 3.0점, 자연 2.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2) 주변생태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0.8	3.2
조사내용	2등급 : 100.0% 점수 : 3.0	2등급 : 27.2%, 3등급 : 72.8% 점수 : 1.5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현황(등급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등급별 가중치{1등급(5), 2등급(3), 3등급(1)}에 대하여 종합 점수 부여 및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 기준점수 1.0 로 산정한 평균값 1.8점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3.2점)로 선정 - 점수: {Σ등급별 가중치\times(편입 용도별 면적 / 총사업면적)} - 점수 : 1.4이하 4.0점, 1.8이하 3.2점, 2.2이하 2.4점, 2.5이하 1.6점, 2.5초과 0.8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3) 대기질 영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4.0	4.0
조사내용	5.24m/s	5.59m/s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확산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뚝 높이(약50m)에서 대기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 고려 - 평균 풍속이 클수록 유리(지상50m 평균 풍속 고려) - 평균풍속 3.5m/s이하 0.8점, 4.0m/s이하 1.6점, 4.5m/s이하 2.4점, 5.0m/s이하 3.2점, 5.0m/s초과 4.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4) 수계영향

가) 주변수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0.6	0.6
조사내용	0.5km이내(상암천, 바다)	0.5km이내(소하천)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수계 인접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유출시피해가 우려되는 수계 현황 - 하천이나 바다와 이격거리가 멀수록 높은 배점 - 거리 0.5km이하 0.6점, 1.0km이하 1.2점, 1.5km 1.8점, 2.0km이하 2.4점, 2.0km초과 3.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나) 상수원 보호구역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1.0
조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 수질보전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유무 - 보호구역 존재 시 0점, 미존재시 1.0점 	
참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 입지여건 	

5) 소음·진동 영향

가) 공사시 영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1.0
조사내용	당내마을 1.6km 기준 / 예측소음도 45.9dB(A) : 기준만족	봉두3리 0.94km 기준 / 예측소음도 50.5dB(A) : 기준만족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인접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 각 후보지별 최단거리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도 예측 - 소음환경 기준(65dB(A이하) 만족 할 경우 높은 배점 - 기준 만족시 1.0점, 미만족시 0.5점 	
참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 입지여건 	

나) 운영시 영향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1.0	
점 수	1.0	1.0
조사내용	당내마을 1.6km 기준 / 24.7dB(A) 기준만족	봉두3리 0.94km 기준 / 29.3dB(A) 기준만족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에 따른 인접지역 소음영향 - 사업시설 외벽 소음도를 기준, 정온시설과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도 예측하여 소음기준 만족시 높은배점 - [주간50dB(A), 야간40dB(A)]기준 만족시 1.0점, 미만족시 0.5점 	
참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 입지여건 	

다) 악취농도 증가요인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2.0	
점 수	1.0	2.0
조사내용	3개소 이상(여수국가산단)	해당사항없음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악취농도 증가요인 - 후보지와 인접하여 기존 또는 장래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존재할 경우 오염농도 증가하므로 주변 악취시설 유무에 따라 배점 - 요인 없음 2.0점, 요소 있음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라. 기술적 조건

1)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가) 절·성토량(토공량)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0.8	4.0
조사내용	순토량 91,500.0m ³ 절토(m ³) : 94,600.0, 성토(m ³) : 3,100.0	순토량 9,600.0m ³ 절토(m ³) : 0.0, 성토(m ³) : 9,600.0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발생량에 대한 평가(공사비증가, 토사 유출 등의 요인이 되는 토공 발생량) - 토공량(절성토량의합계)이 적을수록 높은 배점 - 토공량 0m³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값 27,000m³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3.2점)로 선정 - 토공량 21,600m³이하 4.0점, 27,000m³이하 3.2점, 32,400m³이하 2.4점, 37,800m³이하 1.6점, 37,800m³초과 0.8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2) 진·출입도로 개설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4.0	4.0
조사내용	-	-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도로 설치 필요연장(도로개설로 인한 신규부지 편입 등 고려) - 도로연장 필요 없음 4.0점, 도로연장 필요 2.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3) 기초지반상태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3.0	3.0
조사내용	연경암	연경암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개량 또는 보강 필요 여부 - 지질도 및 인근 시추주상도를 통한 지반 여건 추정 - 기초지반이 연암등 견고한 지반 일수록 높은 배점 - 기초지반이 연경암(3.0점)>풍화암(2.4점)>토사(1.8점)>연약(1.2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4) 집수구역 면적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2.4	0.6
조사내용	11.4ha	30.1ha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배제시설 용량 산정 기준 - 시설입지에 따른 배후 우수배제 유역 면적 - 유역면적이 작을수록 배수시설 규모 작으므로 높은 배점 - 기준면적 0ha준으로 산정한 평균값 13.8ha를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2.4점)로 선정 - 유역면적 11ha이하 3.0점, 13.8ha 2.4점, 16.6ha 1.8점, 19.3ha이하 1.2점, 19.3ha초과 0.6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5) 에너지회수 효율성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4.0	
점 수	4.0	2.0
조사내용	여수국가산단 내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식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에너지 수요처여부 - 스팀, 발전 등 이용가능시설 인접 유무 - 주변지역(2km이내)에 기존 또는 장래 에너지 예상수요처가 있을 경우 높은 배점 - 예상수요처 있을 경우 4.0점, 없을 경우 2.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마. 경제적 조건

1) 개략공사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5.0	
점 수	3.0	4.0
조사내용	292.3억	242.5억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조성계획을 고려한 개략공사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정지 및 토공 등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을수록 유리 (동일규모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계, 전기, 건축, 설비 등의 공사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평균값 (267.4억원=약 270억원)을 전체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 (4.0점)로 선정 - 공사비 216억원 이하 5.0점, 270억원 이하 4.0점, 324억원 이하 3.0점, 378억원 이하 2.0점, 378억원 초과 1.0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2) 토지취득비용(부지보상비)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배 점	3.0	
점 수	3.0	0.6
조사내용	0.0억	6.2억
평가방식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지 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보상비가 적을수록 유리 (공시지가 기준, 국공유지 제외) - 기준 0억원으로 산정한 평균값(2.1억원=약2.0억원)을 전체 배점의 80% 해당하는 점수(2.4점)로 선정 - 토지매입금액 1.6억원 이하 3.0점, 2.0억원 이하 2.4점, 2.4억원 이하 1.8점, 2.8억원 이하 1.2점, 2.8억원 초과 0.6점 	
참 조	• 4.1.2 입지여건	

4.2.4 최적후보지 평가

〈표 4.2.4-1〉 후보지별 평가내용(총괄)

구분	평가기준 및 내용	세부 배점 기준	배점 기준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월내동	결과	소라면	결과
합계			100.0		76.0		71.1
소계			22.0		18.2		13.9
1. 여유부지 확보(시설 연계성)			4.0		4.0		4.0
가. 사업부지 면적	사업부지 추가면적확보(60,0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의 추가면적 확보(기준:60,000㎡) <배점> 기준면적 이상 : 4.0점, 기준면적 미만 2.0점 	4.0	113,749.0㎡	4.0	207,351.0㎡	4.0
2.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4.0		2.4		3.6
가.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시설부지에서 간선도로까지 거리 *간선도로:국도,지방도,국지도, 4차선이상 도시계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에서 시설부지까지 접근연장이 짧을수록 높은배점 <배점> 거리 : 0km 이하 2.0점, 0.2km 이하 1.6점, 0.4km 이하 1.2점, 0.6km 이하 0.8점, 0.6km 초과 0.4점 	2.0	0.70km	0.4	0.00km	2.0
나. 간선도로 제원	간선도로 제원(차로수, 포장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포장 및 차로수가 많을수록 높은배점 <배점> 4차로 이상(아스콘) 2.0점, 2차로 이상(아스콘) 1.6점, 1차로(아스콘) 1.2점, 비포장도로 0.8점 	2.0	왕복 4차로, 아스콘 포장	2.0	왕복 2차로, 아스콘 포장	1.6
3. 토지활용도			4.0		3.2		2.4
가.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현황(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적정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목별 가중치[유흥지·대지·잡종지·공장용지(7), 전·답(5), 임야 및 유수지(3), 하천/구거/제방/도로/기타(1)]에 대하여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배점 점수계산 = {가중치×(편입지목별 면적/총 사업면적)}의 총합 <배점> 점수 : 5.0초과 4.0점, 5.0이하 3.2점, 4.0이하 2.4점, 3.0이하 1.6점, 2.0이하 0.8점 	4.0	4.4점	3.2	3.2점	2.4
I. 일반적 조건							
4. 지장물 현황			3.0		2.4		0.6
가. 지장물 유무	지장물 현황 및 이전·보상가능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내 지장물 종류별 가중치[도로·제방(5), 가옥·건물(4), 파수(3), 개수로(2), 분묘·전신주·기타(1)]를 적용하여 종합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점수계산 = (지장물수량 ×가중치)의 총합 <배점> 점수 : 5.6이하 3.0점, 7.0이하 2.4점, 8.4이하 1.8점, 9.8이하 1.2점, 9.8초과 0.6점 	3.0	6점	2.4	15점	0.6
5. 재해에 대한 안정성			4.0		3.2		2.4
가. 침수에 대한 영향	하천 범람 또는 해수면에 의한 침수피해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지형의 침수심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 <배점> 0.5m이하 : 2점, 1.0m 이하 : 1.6점, 2.0m 이하 : 1.2점, 3.0m 이하 : 0.8점, 3.0m초과 : 0.4점 	2.0	0.5m 이하	2.0	0.5m 이하	2.0
나. 산사태에 대한 영향	부지내 산사태 위험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사태위험지역 등급별 가중치[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에 대하여 종합 점수 부여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배점 점수계산 = (등급별 면적비율×가중치)의 총합 <배점> 점수: 2.0이하 2.0점, 2.5이하 1.6점, 3.0이하 1.2점, 3.5이하 0.8점, 4.0이하 0.4점 	2.0	2.9점	1.2	3.6점	0.4
6. 유틸리티 연계 가능성			3.0		3.0		0.9
가. 전력	기존 배전선로 사용 여부 및 공장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배전선로까지 공장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배점 <배점> 거리 1.6km이하 1.0점, 2km 이하 0.8점, 2.4km 이하 0.6점, 2.8km 이하 0.4점, 2.8km 초과 0.2점 	1.0	0.0km (기존선로 이용)	1.0	6.1km	0.2
나. 상수도	상수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사용 가능성에 대한 배점 <배점> 상수관로 연결 1점 / 지하수 사용 0.5점 	1.0	상수관로 연결	1.0	지하수 사용	0.5
다. 하수도(연계처리관련 관로 연결)	하수관로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시설과 연결가능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배점 <배점> 거리 2.1km이하 1.0점, 2.6km 이하 0.8점, 3.1km 이하 0.6점, 3.6km 이하 0.4점, 3.6km 초과 0.2점 	1.0	0.3km	1.0	7.4km	0.2

구분	평가기준 및 내용	세부 배점 기준	배점 기준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월내동	결과	소라면	결과
II. 사회적 조건	소 계		31.0		24.2		22.2
	1. 폐기물수집·운반 효율성		5.0		3.8		2.8
	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부하량	행정구역별 발생량×운반거리	3.0	5,902.8톤·km/일	1.8	5,242.3톤·km/일	2.4
	나. 최종처분 운반	최종잔재물(바닥재) 매립을 위해 월내 매립장까지의 거리 비교	2.0	0.18km	2.0	19.70km	0.4
	2. 주거지역과 거리, 세대수		9.0		9.0		5.4
	가. 최단이격거리	후보지 경계로부터 주거지역이격거리	4.0	1.6km	4.0	0.94km	2.4
	나. 간접영향권내 세대수	간접영향권(300m)내 세대수	5.0	없음	5.0	4세대	3.0
	3. 관련법 인·허가 용이성		5.0		2.4		5.0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불리 여건 (보전관리지역)	2.0	11필지	0.4	0필지	2.0
	나.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유무	3.0	전용가능	2.0	미포함	3.0
	4. 주민동의도		12.0		9.0		9.0
	가. 주민동의도(유치희망)	유치희망지역 신청 유무	2.0	신청	2.0	신청	2.0
	나. 주민의견서 참여율	주민의견서 참여비율	5.0	67%	3.0	59%	2.0
	다. 주민의견서 동의율	주민의견서 동의 비율	5.0	91%	4.0	98%	5.0
III. 환경적 조건	소 계		21.0		13.4		16.8
	1. 경관성		5.0		4.0		4.0
	가. 주변경관현황	산지, 구릉지, 농경지등 자연경관현황	5.0	혼재	4.0	혼재	4.0
	2. 주변생태계		4.0		0.8		3.2
	가.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현황(등급별)	4.0	3.0점	0.8	1.5점	3.2
	3. 대기질 영향		4.0		4.0		4.0
가. 확산용이성(풍속)	대기확산 용이성	4.0	5.24m/s	4.0	5.59m/s	4.0	

구 분	평가기준 및 내용	세부 배점 기준	배 점 기준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월내동	결과	소라면	결과	
III. 환경적 조건	4. 수계 영향			4.0		1.6	1.6	
	가. 주변수계 현황	주변 수계 인접여부	•오염물질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수계 현황, 하천이나 바다와 이격거리가 멀수록 높은 배점 •<배점 > 2.0km초과 3.0점, 2.0km이하 2.4점, 1.5km이하 1.8점, 1.0km이하 1.2점, 0.5km이하 0.6점	3.0	0.5km 이하	0.6	0.5km 이하	0.6
	나. 사업시행으로 수계영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수질보전이 필요한상수원 보호구역 유무 •<배점 > 보호구역 존재시 0점 / 미존재시 1점	1.0	미존재	1.0	미존재	1.0
	5. 소음·진동 영향			4.0		3.0		4.0
	가. 공사시 영향	공사시 인접지역에 미치는소음영향	•각 후보지별 최단거리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도 예측, 소음환경 기준(65dB(A이하) 만족 할 경우 높은 배점 •<배점 > 기준 만족시 1.0점 / 미만족시 0.5점	1.0	45.9dB(A)	1.0	50.5dB(A)	1.0
	나. 운영시 영향	시설 운영에 따른 인접지역소음영향	•사업시설 외벽 소음도를 기준, 정온시설과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도 예측하여 소음기준 만족시 높은배점 •정온시설 : 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등 •<배점 > [주간50dB(A), 야간40dB(A)] 기준 만족시 1.0점 / 미만족시 0.5점	1.0	24.7dB(A)	1.0	29.3dB(A)	1.0
다. 악취농도 증가요인	주변 악취농도 증가요인	•후보지와 인접하여 기존 또는 장래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존재할 경우 오염농도 증가하므로 주변 악취시설 유무 •<배점 > 미존재 2.0점, 존재 1.0점	2.0	존재	1.0	미존재	2.0	
	소 계			18.0		14.2		13.6
IV. 기술적 조건	1.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4.0		0.8		4.0
	가. 절·성토(토공량)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발생량에 대한평가	•공사비 증가, 토사 유출 등의 요인이 되는 토공 발생량, 토공량(절성토량의 합계)이 적을수록 높은 배점 •<배점 > 토공량 21,600m ³ 이하 4.0점, 27,000m ³ 이하 3.2점, 32,400m ³ 이하 2.4점, 37,800m ³ 이하 1.6점, 37,800m ³ 초과 0.8점	4.0	순토량 91,500m ³	0.8	순토량 9,600m ³	4.0
	2. 진출입도로			4.0		4.0		4.0
	가. 진입도로 설치 필요 연장	진입도로 설치 필요여부 및도로연장	•진입도로 연장이 짧을수록 높은 배점(도로개설로 인한 신규부지 편입 등 고려) •<배점 > 진입도로 연장 0.56km이하 4.0점, 0.70km이하 3.2점, 0.84km이하 2.4점, 1.0km이하 1.6점, 1.0km초과 0.8점	4.0	0.0km	4.0	0.0km	4.0
	3. 기초지반상태			3.0		3.0		3.0
	가. 기초지반 여건 분석	지반개량 또는 보강 필요 여부	•지질도 및 인근 시추추상도를 통한 지반 여건 추정, 기초지반이 연경암 등 견고한 지반 일수록 높은 배점 •<배점 > 기초지반이 연경암 3.0점 / 풍화암 2.4점 / 토사 1.8점 / 연약 1.2점	3.0	연경암	3.0	연경암	3.0
	4. 집수구역 면적			3.0		2.4		0.6
	가. 사업부지 우수배제 유역	우수배제시설 용량 산정 기준	•시설입지에 따른 배후 우수배제 유역 면적, 유역면적이 작을수록 배수시설 규모 작으므로 높은 배점 •<배점 > 유역면적 11ha 이하 3.0점, 13.8ha 이하 2.4점, 16.6ha 이하 1.8점, 19.3ha 이하 1.2점, 19.3ha 초과 0.6점	3.0	11.4ha	2.4	30.1ha	0.6
	5. 에너지회수 효율성			4.0		4.0		2.0
가. 예상 에너지 수요처	주변 에너지 수요처 여부	•스팀, 발전 등 이용가능시설 인접 유무, 주변지역(2km이내)에 기존 또는 장래 에너지 예상수요처가 있을 경우 높은 배점 •<배점 > 예상수요처 있을 경우 4.0점 / 없을 경우 2.0점	4.0	있음	4.0	없음	2.0	
	소 계			8.0		6.0		4.6
V. 경제적 조건	1. 개략공사비	시설 조성계획을 고려한 개략공사비검토	•부지정지 및 토공 등에 소요되는토목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동일규모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계, 전기, 건축, 설비 등의 공사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배점 > 토목공사비 216억 이하 5.0점, 270억 이하 4.0점, 324억 이하 3.0점, 378억 이하 2.0점, 378억 초과 1.0점	5.0	292.3억	3.0	242.5억	4.0
	2. 토지취득비용 (부지보상비)	시설부지 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	•부지보상비가 적을수록 높은 배점(공시지가 기준, 국공유지 제외) •<배점 > 토지매입금액 1.6억 이하 3.0점, 2억 이하 2.4점, 2.4억 이하 1.8점, 2.8억 이하 1.2점, 2.8억 초과 0.6점	3.0	0.0억	3.0	6.2억	0.6

제5장 관련법규 검토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관련 법규

5.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법규

제 5 장 관련법규 검토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관련 법규

5.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1.1.12.>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12. 8.>

[별표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신설 2020.12.8.>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 제8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전문개정 2009.6.16.>

-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전문개정 2009.6.16.>

② 삭제

③ 삭제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8.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6.16.>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1.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삭제 <2010.4.15.>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의 지원 등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6.16.>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1.4.5.>

-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 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16.>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20.6.9.>

-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동법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신설 2015.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

<p>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p>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p>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8.3.></p> <p>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p><전문개정 2009.6.16.></p> <p>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7.></p> <p>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7.></p>

동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6.16.>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동법 시행령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

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전문개정 2009.6.16.>

5.1.2 환경영향평가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 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5.2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개정 2020.7.28.>

2. 개발기본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시행령 제31조)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개정 2020.7.28.)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5. 폐기물 처리 시설·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u>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u></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p> <p>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5.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가. 관련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8.4.>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

<p>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p> <p>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p> <p>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p> <p>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p> <p>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p> <p>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p> <p><전문개정 2011.8.4.></p>

나. 토지 사용 또는 사용의 절차

<p>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p> <p><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8.4.></p>
<p>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3.31></p> <p>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p>

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6.9.>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11.8.4.>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

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¹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4.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¹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이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라. 이주대책의 수립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

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5.1.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2017.1.17.>

1.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7.>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 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⑩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5.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법규

5.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태와 특성, 장래 토지이용 계획(각종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가. 관련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 분류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6.>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이 해당 (동법 시행령 2조 7호)

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1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7.16.>

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이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라. 국토의 용도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마.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바. 용도지역의 세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57조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가능 지역 중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지역 분류는 아래와 같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8.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칙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정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에 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주) 조문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한 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이 해당

제6장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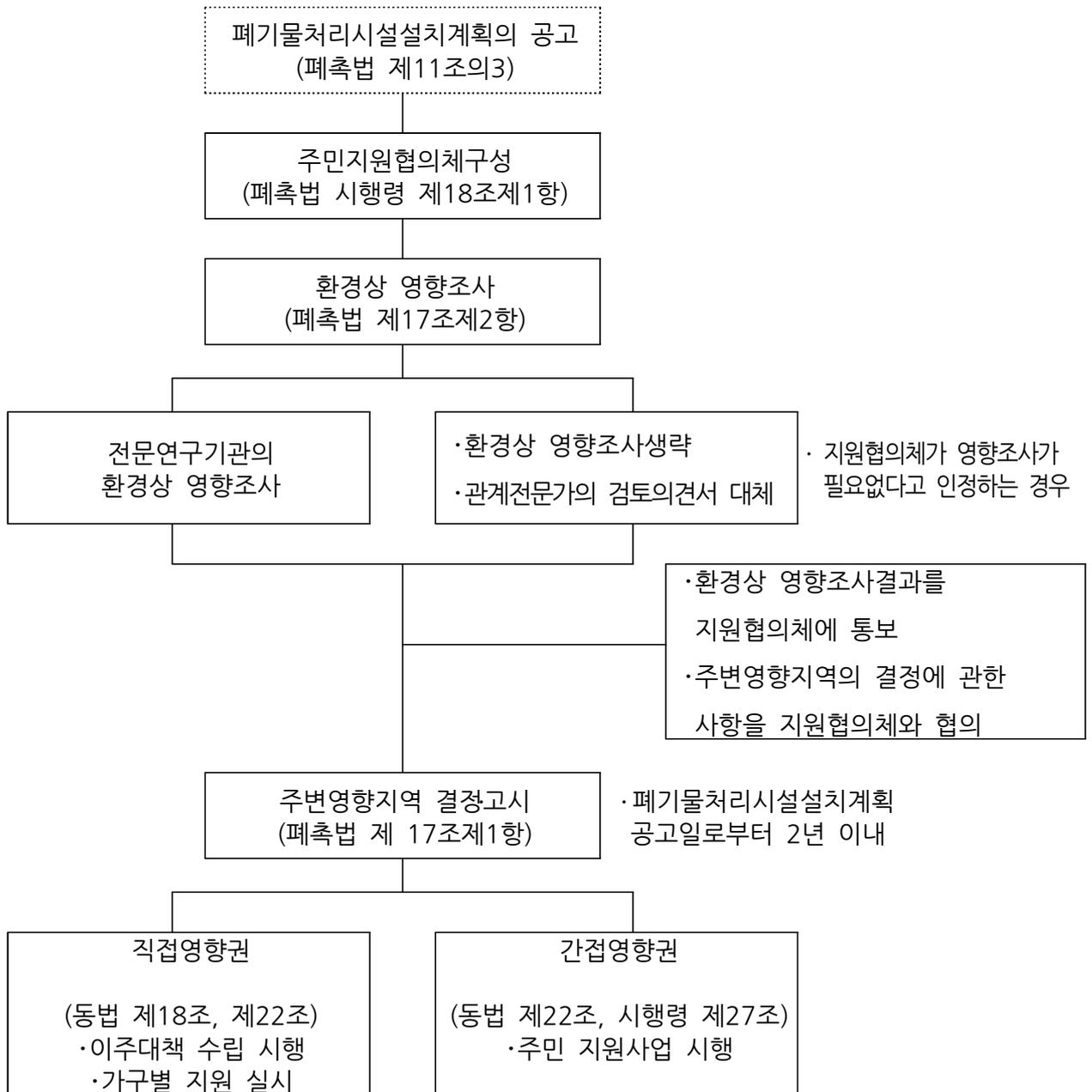
- 6.1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
- 6.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 6.3 여수시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
- 6.4 타 지자체 주민지원사업 사례

제 6 장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

6.1 입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

6.1.1 주변영향지역 지원 업무흐름도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하여 다음의 업무흐름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7.1.1-10)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업무흐름도

자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2004.12, 환경부)

6.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3.15.)

법	시행령
<p>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p>
<p>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p>	<p>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p> <p>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법	시행령
<p>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p> <p>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7]</p>	<p>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u>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p> <p>(후략)</p>
<p>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7.12.27]</p>	<p>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p> <p>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p>[전문개정 2009. 6. 16.]</p>

6.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6.3 여수시 주변영향지역 지원 계획

여수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여수시 공고 제2023-350호)를 통해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게 될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표 7.3-0〉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계획

사업의 종류	주민지원내용	규모 (억원)	지원시기
유치 지역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시설공사비의 20% 비율 범위 이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약 400	○ 사용개시 이전까지 설치
	○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출연금(기금)으로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 ☞ 주민지원기금에 출연 가능
	○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기금지원	약 5 (매년)	○ 시설사용 개시년도부터 ○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 주민지원기금 지원

- 주) 1) 유치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작성 후 시설용량 및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유치지역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정.
 3)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결성 후 논의하여 최종결정.

6.4 타 지자체 주민지원사업 사례

타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4-1〉 주민 지원사업 사례

구 분	시설개요 (준공일자)	사업의 종류	지 원 내 용
구미시 환경 자원화 시설	소각 200톤/일 매립 2,514천㎡ 재활용선별 50톤/일 (2011.01)	소득증대	태양광발전사업(산동면)
		복리증진	•도로공사(산동비재도로 선형개선공사)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총 2.6km, 폭 11m 신설·확장)
		육영사업	•상수도 공급 및 시설 조기확충(송백지구)
		육영사업	•장학재단 설립 기금

구 분	시설개요 (준공일자)	사업의 종류	지 원 내 용
화성 그린환경 센터	소각 300톤/일 (2010.04)	복리증진	•주민지원사업(냉난방비 지원, 복지회관 건립, 학자금 지원 등)
			•편익시설(수영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탁구장 등) 할인이용
익산 환경 자원화 시설	소각 200톤/일 (100톤/일x2) (2009.09) 매립 115천㎡ (2009.02)	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비(연차사업) •포상금(유치 3개 마을) •유치 3개 마을 발전기금 현금지원(출연금)
		복리증진	•편익시설(체육시설, 문화공간, 테마공원)
	육영사업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도서관 등)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소각 200톤/일 (2009.04)	소득증대	•주민지원기금 : 주민공동사업체(㈜휴암농산-농산물 건조업) 설립(부지매입비 11.3억 포함)
		그외사업	•직접영향권 지역 주민 현금지급(2013) : 가구당 1,000만원씩
무안 환경 관리종합 센터	소각 45톤/일 매립 293천㎡ 재활용선별 20톤/일 음식물폐기물건조 10톤/일 (2008.07)	소득증대	•고용창출 (시설 운영기간(20년간) 지역주민 채용)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도로포장 등) 3개 마을(5년간) •난방연료보조(15년간) •복지시설 무료 이용(목욕탕, 찜질방 등)
			그외사업
전주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170톤/일 (2006~2044)	그외사업	•반경 2km 이내 가구 현금지원(2007) : 1순위(3백만원) 갯벌소유자, 2순위(2백만원) 원주민, 3순위(1백만원) 이후거주자 •출연금 지원 •주민지원협의체(매년 지원)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상수도공사, 농로포장 등)
			복리증진
	그외사업	•직접피해영향권(반경 300m) 가구당 1천만 원 지원(매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연차지원(공모시 제시)	

제 6 장 입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

구 분	시설개요 (준공일자)	사업의 종류	지 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발전기금 (유치 3개 마을) •포상금 (유치 3개 마을)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	소각 750톤/일 (250톤/일x3기) (2005.06)	복리증진	•지역숙원사업 (상암동 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용인시 환경센터	소각 300톤/일 (100톤/일x3기) (2005.10)	복리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확장, 도시가스, 상수도 확충사업 등) •시민체육센터 건립(용인시 출연금)
구리시 광역 자원회수 시설	소각 200톤/일 (100톤/일x2기) (2001.12)	복리증진	•편익시설(실내수영장, 사우나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녹지 및 야외화장실, 주차장)
수도권 매립지	매립 289백만㎡ (1991~2025)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공동사업(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가현산 약수터 정비공사) - 학교지원(급식비, 기자재, 통학버스 등) - 해외시찰(지역주민 선진매립장 시찰) - 기타(환경정비 및 주민자치회 지원 등) •법정 동별 공동사업(15%)
		그외사업	•세대별 지원(70%)
곡성군	소각장(20t/일), 매립시설(11만8천㎡), 자원회수센터(13t/일), 음식물류폐기물 (10t/일)	입지후보지 3차 공모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 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 봉 투 판매 대금 등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
천안시	생활폐기물 260톤/일, 음폐수 140톤	-	•가칭 한들골프연습장(100억 원)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59억 원 출연을 제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380톤/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1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수영장과 유 아풀, 사우나, 찜질방, 체련 단련실, 키 즈카페,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등이 조 성

